



학부모-학생

안내서 2008-2009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Korean)



지난 해를 성찰하고 2008-2009 전통 수업제 학년도를 준비하면서,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산하 학부모, 교사, 행정관 및 직원들은 여러 성과에 대해 자랑스런 마음을 가져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교육구가 활발한 진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력고사 점수, 출석률, 영어 미숙생의 영어 능숙 학생으로의 재배치률은 향상되고 있습니다. 미 전국에서 가장 방대한 규모로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학교 신축 및 현대화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것들과 기타 긍정적인 동향들은 리더십, 헌신 및 노력 등이 적절한 도구들과 결합되었을 때 수천명의 학생들을 위한 세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학생들의 밝은 장래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신감은 예전에 비해 훨씬 더 많이 가득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커뮤니티는 학부모, 교사, 일반 직원 및 행정관의 여러 강점과 헌신노력으로 구성된 독특한 곳입니다. 학생의 배움 증진에 있어서 커뮤니티의 힘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믿음 시스템은 우리 학교들의 향상을 위해 다방면에서 도움을 주어왔습니다. 제가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학교와 커뮤니티를 방문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함께 팀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저에게는 보다 확실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우수 학력 성취 목표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학교와 커뮤니티 사이의 탄탄한 파트너십을 요구합니다. 매일 학교 문을 들어서면 우리 학생들은 장래의 희망과 우리의 헌신을 믿고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는 함께, 모든 학생들의 성공적인 삶을 준비를 위해 그들에게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활기찬 2008-2009 학년도 그리고 주 및 전국적으로 최고 도심지 교육구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을 계속적으로 지원해주시고 자녀의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주실 것을 부모 및 보호자에게 부탁드립니다. 학부모/교사 컨퍼런스, 백-투-스쿨 나이트 행사, 오픈 하우스에 참여하고, 담당 교사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들이 자녀 학교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 중 일부입니다.

2008-2009 LAUSD 학부모 학생 안내서는 학교 운영에 대한 귀하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녀와 함께 이런 내용을 읽어서 본 교육구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보다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LAUSD를 대신하여, 성공적인 학년도를 고대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David L. Brewer III
총 교육감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의 교사, 행정관 및 직원은, 모든 학생들의 가치와 존엄은 동등하다는 것을 믿으며, 모든 학생이 최대 잠재력에 도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목차

총 교육감이 드리는 메시지	
해당 부서	3
교육적 권리 및 책임	
LAUSD 졸업 필수조건	5
의무교육	6
거주지 학교	6
거주지 변경/비상시 연락 정보	6
포스터 청소년	6
무숙자 학생	7
공립 학교 선택	7
보충 교육 서비스	7
대안 학교	7
교육 옵션 학교	8
학교 책무 보고서	8
전학 권리	
학생 출석 옵션	8
등록 허가 및 학생 전학	8
타교육구 등록 허가 및 전학	8
교육구 내 등록 허가 및 전학	8
동등한 기회	
차별 금지 서명서	9
타이틀 IX 및 학생	9
장애 학생/제 504항 하의 의료 상태	10
장애 학생 및 특수 교육	10
학부모 참여	
학부모 권리	10
학부모 참여	10
학부모 참여 방침	11
부모의 알 권리	11
학교 스케줄	11
학생 성적 변경에 대한 부모의 권리	11
언론 매체 공개	11
출결석	11
무단 결석	12
정당한 결석	12
결석 사유	12
정당한 사유 없는 결석	13
종교적 사유로 인한 결석	13
종교적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면제	13
금전적 배상/부모의 책무	13
학교 기록을 접할 기회	
가정의 교육적 권리 및 사생활 보호권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법 및 주법	13
학생 기록 보관 장소	14
학생 기록 정보에 대한 이의 제기	14
학생 권리 및 의무	
학교 대항 운동 경기	14
학생과의 관계	15
학생의 품행	15
왕따 금지 방침	15
성희롱 관련 방침	15
아동 학대	16
LAUSD 학생/학교 품행 규정	16
통학버스 내에서의 품행 규정	17
학생 복장 규정/교복	17
정치적 행위, 군중, 집회, 데모, 위크아웃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17
학생 수색	17



목차

학생 개인 소지품	18
휴대폰	18
인터넷 사용	18
학생 징계: 정학, 퇴학 및 기회 전학	
학생 훈육: 징계 규칙	18
정학 및 퇴학	19
퇴학으로부터의 재활 및 복원	21
기회 전학	21
징계 처분에 대한 항소	21
안전한 학교 환경	
알콜, 담배, 약물 및 폭력-예방 및 금지	21
총기 없는 안전한 학교	21
학교 교정 방문인	21
조정된 안전 및 건전한 학교 플랜	22
비상시 대책	22
비상 시 부모가 더 잘 대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22
비상시 대처	22
비상 사태 발생시 부모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23
의료 및 건강 정보	
처방약 투여	23
예방 접종	23
결핵 일소	23
신체 검진	23
임시 장애 학생	24
전염병 예방	24
학생 건강 보험	24
기타 건강 정보	24
학교-중심 메디칼 서비스	25
학교 중심 메디칼 서비스	
표준 학력고사 및 결과 발표	25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조기 평가 프로그램	26
캘리포니아 고교 졸업 시험	26
캘리포니아 영어 언어 개발 테스트	26
체력검사	26
기타 중요 정보	
수업 시작 전, 방과후 프로그램	27
아침 및 점심 급식	27
교통편	28
학생 사고 보험	28
방부 처리한 유기체 및 생체를 사용한 과학 실험의 대안	28
캘리포니아 종합 성 건강 및 HIV/에이즈 예방 교육법에 준한 성교육 과목	28
학부모/보호자 연례 콘돔 제공 프로그램 관련 통지서	31
균일 고소 절차	31
윌리엄스/벨렌주엘라 균일 고소 절차	32
석면 관리 플랜	32
통합 해충 관리 프로그램	32
LAUSD 통지 시스템: "CONNECT-ED"	33
서식서	
학부모/학생 인정서	36
정보 공개서	38
LAUSD 연락 정보 통지 시스템 CONNECT-ED 서식서	40
공인 살충제 목록	42
연례 살충제 사용 통지서	46
아동 헬스 액세스 및 메디칼 프로그램 (CHAMP)	48
사생활 보호 업무 수행 통지서	49
색인	51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해당 부서

교육 위원회

333 South Beaudry Ave., 24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전화번호: (213) 241-6389

팩스번호: (213) 241-8953

교육위원 무료번호

1-877-77-BOARD (26273)

Ms. Marguerite Poindexter LaMotte	District 1	(213) 241-6382
Ms. Monica Garcia	District 2	(213) 241-6180
Ms. Tamar Galatzan	District 3	(213) 241-6386
Ms. Marlene Canter	District 4	(213) 241-6387
Ms. Yolie Flores Aguilar	District 5	(213) 241-6383
Ms. Julie Korenstein	District 6	(213) 241-6388
Mr. Richard Vladovic	District 7	(213) 241-6385

총 교육감실

David L. Brewer III, 총 교육감

333 South Beaudry Ave., 24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전화번호: (213) 241-7000

팩스번호: (213) 241-8442

superintendent@lausd.net

소 교육구 부서

제 1 소 교육구

Jean Brown
6621 Balboa Blvd.
Van Nuys, CA 91406
(818) 654-3600

제 2 소 교육구

Alma Peña Sanchez
5200 Lankershim Blvd.
North Hollywood, CA 91601
(818) 755-5300

제 3 소 교육구

Michelle King
3000 South Robertson Blvd.
Los Angeles, CA 90034
(310) 253-7100

제 4 소 교육구

Richard Alonzo
4201 Wilshire Blvd. Suite 200
Los Angeles, CA 90010
(323) 932-2266

제 5 소 교육구

Carmen N. Schroeder
2151 North Soto Street
Los Angeles, CA 90032
(323) 224-3190

제 6 소 교육구

Martin Galindo
5800 South Eastern Ave.
Commerce, CA 90040
(323) 278-3900

제 7 소 교육구

Carol Truscott
10616 South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47
(323) 242-1300

제 8 소 교육구

Linda DelCueto
1208 Magnolia Ave.
Gardena, CA 90247
(310) 354-3400



해당 부서

성인 및 커리어 교육	213 241-3150
비온드 더 벨(Beyond The Bell)	213 241-7900
예산 국장	213 241-2100
비즈니스 매니저	213 241-2947
최고 시설 상임위원	213 241-4811
최고 재정 책임자	213 241-7888
최고 조달 책임자	213 241-3058
커뮤니케이션 국장	213 241-7000
조기 교육	213 481-3300
동등한 교육 준수 부서	213 241-7682
비상사태 서비스	213 241-3889
동등한 기회 영역	213 241-7685
교육위 상임부서	213 241-7002
시설 관리 및 운영	213 241-0352
인적 자원	213 241-6131
정보 핫라인	213 241-4500
학교 대항 운동 경기 부서	213 207-2200
KLCS 채널 58	213 241-4000
독립 사정관 부서	213 241-6036
총 검사관 부서	213 241-7700
최고 정보 책임자 부서	213 241-4906
최고 학습지도 책임자 부서, 초등학교	213 241-5257
최고 학습지도 책임자 부서, 중고교	213 241-4909
최고 운영 책임자 부서	213 241-4133
환경 보건 및 안전 부서	213 241-3199
총 변호사 부서	213 241-6601
총 교육감실	213 241-7000
학교 운영 부서	213 241-4133
학교 재설계 부서	213 241-3827
학부모 커뮤니티 서비스 부서	213 217-5272
인사부	213 241-7800
평가 및 리서치 플래닝	213 241-2460
학교 경찰국	213 625-6631
교육위 특별 자문인실	213 241-8306
특수 교육	213 241-6701
특별 자금, 학부모/커뮤니티 프로그램	213 241-6532
학생 보건 및 인적 서비스	213 241-3840
LAUSD 주소록 지원부	213 241-1000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 at www.lausd.net 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교육적 권리 및 책임

LAUSD 졸업 필수조건

2005년 6월 14일, LAUSD 교육위는 A-G 결의안을 승인했으며, 이는 A-G 학과목 이수를 고교 졸업 조건의 일부로 시행함으로써 교육의 형평성을 이룩하고자 함이다. A-G 결의안에 의해, 2008년 7월 1일부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15개 대학 진학용 학과목 이수 과정으로 구성된 졸업 조건이 설정된다. (LAUSD 공문 2513.1).

고교 졸업장 취득 기타 조건: 고교 230 학점 이수, 캘리포니아 고교 졸업 시험(High School Exit Examination-CAHSEE) 두개 영역 모두 통과, 서비스 학습 조건 이수, 4 학기 체육 과목 및 캘리포니아 체력 검사(the California Fitness Gram) 통과 그리고 컴퓨터 리터러시 조건. 매년 자녀의 학교 카운슬러를 만나서 이런 모든 조건을 상의할 것을 학부모에게 권장한다.

2008년 7월 1일부터, 9학년으로 진학하는 모든 학생(2008-2012/2012년 졸업 예정 학생)은 15-과목 A-G 과정에 반드시 등록해야만 한다. 제 일차 학생들은 10 학년 2학기까지는, A-G 조건 대신 대안 패스웨이(커리어 기술 교육/CTE 과목 과정)로 고교 졸업장 취득을 선택할 수 없을 것이다. CTE 대안 패스웨이를 선택하는 경우, 학부모/보호자와 학생은 담당 카운슬러를 만나서 고교 졸업 후 어떤 선택(커뮤니티 칼리지, CSU/UC, 기술/직업 대학, 학비 지원 등)이 있는 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학부모/보호자와 학생은 고교 졸업장 취득 목표로 A-G 과정 이수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교육구 양식에 반드시 "서명"해야만 한다.

- The 제 2차 A-G 학생들(2012-2016/2016년 이후에 졸업 예정 학생)은 이런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만 고교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규칙의 예외 경우는; 1) 9학년 종료시, CTE 대안 패스웨이를 선택한 학부모/보호자와 학생 (위에 언급된 카운슬러와의 직접 상담과 같은 동일한 종류의 미팅은 의무적으로 실시될 것이다); 2) 해당 IEP에 A-G 대신 대안 패스웨이를 기재한 특수 교육 학생 그리고 3) 정규 성적기록이 없는 11 그리고/또는 12학년으로 미국에 도착하여 입학한 영어 미숙 학습생.

카운슬링 요소

중학교/고교 보충 카운슬링 프로그램(AB1802)에 의거하여, 7-12 학년생을 대상으로 학생, 부모 및 카운슬러의 컨퍼런스를 매년 실시해야만 한다.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하면, 부모/보호자와 학생은 담당 카운슬러와 만나서 개별 중학교 졸업 계획서(Individual Culmination Plan-ICP)를 작성하며, 고교로 진학하면, 개별 고교 졸업 계획서 (Individual Graduation Plan-IGB)를 작성할 것이다.

SB 405에 의해 해당 조건이 확장되었고 이에 학생의 진로 목표, 학업 및 커리어 관련 기회 그리고 4년제 대학 입학 자격에 요구되는 학과목 및 내신 성적을 설명하는 것이 포함된다. A-G

조건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식별되고 모니터되어야 한다.

이것은 AB 347에 추가되는 내용으로서, 모든 졸업 조건은 충족시켰지만 CAHSEE의 두개 영역을 모두 통과시키지 못한 2006, 2007 그리고 그 이후에 졸업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추가 통지, 카운슬링, 서비스 모니터 및 학생 문서화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한다.

"A - G" 학 과 목 조 건

a | 역사/사회 - 2년 필수

역사/사회 과목 2년, 1년의 세계사, 문화 및 지리; 1년의 미국 역사 또는 반년의 미국 역사와 반년의 시민 또는 미국 정부.

b | 영어 - 4년 필수

대학-준비용 영어 과목 4년으로서 이에는 정규 작문, 고전 및 현대 문화 읽기가 포함된다. ESL-유형 과목은 단지 1년만 이 조건에 적용될 수 있다.

c | 수학 - 3년 필수, 4년 추천

대학-준비용 수학 과목 3년으로서 이에는 초급 및 상급 대수 그리고 입체 기하 관련 주제가 포함된다. 승인된 통합 수학 과목은 이런 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7학년 및 8학년에서 이수한 고교 과목과 동등한 수학과정도 적용될 수 있다.

d | 실험이 포함된 과학 - 2년 필수, 3년 추천

실험이 포함된 과학 과목 2년이며 생물, 화학 및 물리의 3개 기본 과목 중 적어도 2개 과목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는 과목들이다. 예비 과목으로 생물, 화학 또는 물리가 포함되어 있고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기 적용될 수 있는 상당한 추가 내용이 포함된 상급 실험 과학 과목들이 적용되는 바와 같이, 3개의 기본 과목 중 적어도 2개를 엄격히 적용한 통합 수학 3년 과정 중 마지막 2년을 적용시킬 수 있다

e | 외국어 - 2년 필수, 3년 추천

한가지 외국어 2년. 말하기와 이해에 주력한 과정이며 문법, 어휘, 읽기, 작문 그리고 문화 과정에 포함된다. 7학년과 8학년 때 이수한 외국어는 이런 조건의 일부로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고교가 이를 동등한 외국어 과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f | 시각 및 공연 예술 (VPA) - 1년 필수

VPA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며, 승인된 예술 과정 1년: 안무, 드라마/연극, 음악 또는 미술.

g | C대학-준비용 선택과목 - 1년 필수

위에 언급된 "a-f"에 조건에 추가되는 것으로 다음 영역 중에 선택하며 1년을 이수한다(2학기): 시각 및 공연 예술(비-초급 과정), 역사, 사회 과목, 영어, 상급 수학, 실험 과학 또는 또 다른 언어 2년)

*** 2008년 7월 1일부터 9학년생으로 진학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어 2년 조건("E" 조건)이 요구될 것이다. 요청이 있는 경우, 학생은 외국어를 택할 수 있으면 가급적 이른 시기에 외국어 첫번째 년도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런 조건은 고교 2년 동안 완성될 수 있으며, 또한 이전의 교육을 받았다는 검증이나

시험(앞으로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될 것임)을 통해서도 완성될 수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카운슬링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 3년차 수학(모든 학생은 최소 3년의 수학을 이수할 것을 권장받으며 이에는 대수 II AB가 포함된다)은 A-G 결의안의 추가 조건이다. UC 계열 대학은 수학 4년을 추천한다는 점을 유념하시오.

***** 기회가 닿을 때마다 이런 조건을 해당 구성원들(교사, 학부모, 학생, 소속 학교, 커뮤니티)에게 전달한다면 A-G 조건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학생의 능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의무 교육

교육법 제 48200에 의하면, 제 3장 하에(제 48400부터 시작) 면제된 6세에서 18세 사이의 사람 이외의 모든 사람은 풀타임 의무교육의 대상이 된다. 풀타임 의무 교육 대상자 그리고 제 2장 또는 제 3장에(제 48400부터 시작) 의해 면제되지 않은 의무 컨티뉴에이션 교육 대상자는 정규 공립학교 또는 컨티뉴에이션 학교 또는 클래스에 해당 교육구 운영 위원회에 정한 학교 시간 동안 출석하며 그리고 부모나 보호자가 위치한 거주지에 사는 기간 동안 해당 학생을 양육하는 부모나 보호자 또는 기타 사람은 학생을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거주지 해당 교육구 운영 위원회에서 정한 전체 학교 시간 동안 정규 공립학교나 컨티뉴에이션 학교 또는 클래스에 출석시킨다.

로스앤젤레스 시 및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배회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18세 미만의 학생으로서 의무 교육 대상자가 학교를 출석해야 하는 날짜에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 사이에 공공 도로, 고속 도로, 길, 골목, 공원, 놀이터 또는 기타 공공 장소에서 배회하는 것을 금지한다. 본 조례를 위반한 학생은 법정 소환장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정에 부모를 동반하여 출두해야 하고, 법정이 부가한 벌금 조치를 받으며, 그리고 운전 면허증이 중지될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거주지 학교

16세에서 18세 사이의 사람은,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풀타임 의무교육의 대상이 되며, 부모나 보호자의 주거지역에 위치한 학교에서 그리고, 해당 학생에 대한 권위나 책임을 지닌 각 부모, 보호자 또는 기타인은 해당 학생을 공립 풀타임 학교, 컨티뉴에이션 학교 또는 학교 시간과 동일한 풀타임으로 된 클래스에 보내며, 그 학교는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주거지 소재 학교로 한다. (교육법 제 48200). 가정의 이혼, 법적 별거, 미혼 부모의 자녀의 경우, 해당 학생은 양쪽 부모의 거주지 중 한 곳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다. 이중 등록은 엄격히 금지되며, 기록상 거주지는 한곳으로만 할 수 있다[정부 법규 제 244(b)]. 무숙자 학생은 실제로 거주하는 구역의 학교에도 다닐 수 있고 또는 무숙자가 되었을 때 다녔던 학교에 다닐 수도 있다. 특정 상황인 경우, 거주지 학교 이외의 타학교로 전학이 허락될 수 있다.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은 비장애인이자라면 다녔을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만 다만 장애 학생의 IEP에 기타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이다. 부모는 모든 질문과 요청을 해당 소교육구의 학생 서비스 및 출결석(Pupil Service and Attendance) 카운슬러 또는 코오디네이터에게 말하거나 학생 서비스 및 출결석 부서의 허락서

및 학생 전학 부서(Permit and Student Transfer)에 (213) 745-1960으로 연락하도록 한다.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학생은 다음 조건 하에 교육구 학교에 다닐 수 있다:

- 정규 공인 아동 기관 또는 공인 포스터 홈, 복지 및 기관법 하에 패밀리 홈에 배치된 학생들은 배정된 학교에 증빙 서류를 제공한다(아래 포스터 아동 부분을 참고하시오).
- 타교육구 재학이 승인된 학생
- 거주지가 교육구 구역 내에 위치한 친권이 없는 독립 아동
- 교육구 구역 내에 위치한 주립 병원에 거주하는 학생
- 케어를 제공하는 성인과 살고 있는 학생, 단지 교육구가 해당 학생이 케어 제공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거주지/비상시 연락처 변경

주소, 전화번호 또는 비상시 연락처의 변경 내용을 학교에 알리는 것은 부모, 보호자 및 포스터 케어 및 탁아 제공 성인의 책임이다. 학교가 거주지 정보 통지에 대한 통지 의무를 다했다고 가정한 경우, 주소 변경 이후 30일 달력 날짜 이내로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불이행한 경우, 지속적인 등록 허가(Continuing Enrollment Permit) 권리가 몰수되는 사유가 된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내용을 문서(미 우편물)와 구두 의사전달(전화, 휴대폰)의 두가지 방법으로 제공해야만 한다.

학생 건강 및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학부모/법적 보호자나 탁아인에게 즉각적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LAUSD는, EC 49408조에 의거하여, 학부모/보호자에게 현 비상시 연락처 정보를 학교의 정식 이머전시 카드(약식 34-EH-12)에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학부모/법적 보호자 또는 탁아인은 학생이 학교에 등록할 때마다 이머전시 카드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한다. 이머전시 카드의 기재 내용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집 주소 및 휴대폰 전화번호를 포함한 현 전화번호
- 직장/비즈니스 주소 및 직장 전화번호
- 친척/친구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로서 이들은 학부모/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비상 시 해당 학생을 픽업해서 돌보도록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머전시 카드에 기재되지 않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학생은 보내지지 않을 것이며, 단지 학부모/법적 보호자가 때에 따라 서면 허락서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부모는 적어도 일년에 두번 이런 정보를 최신의 것으로 갱신해두어야만 한다.

포스터 아동

2004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하원 의원 법안 490조에 의하면, 포스터케어(보호감찰이나 DCFS에 의해 감독받는 아동 그리고 공인 포스터홈, 그룹 홈 또는 친척 집에 배정된 아동)를 받는 아동을 위해 교육과 관련된 새로운 의무와 권리를 부가시킨다. 신규 법안은 학교 배정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전학 절차를 개선시킨다. 아동의 이익을 최선으로 두고 결정한다면, 포스터 아동은 거주지가 원래 재학 학교 구역 밖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학년도 동안 원래 거주지 학교에서 나머지 학사기일을 마칠 권리가 있다. (교육법 제 48853.5항). 더불어, DCFS 또는 보

호 감찰청의 “아동 배치 신분 학교 통지서(Notification to School of Child's Placement Status)’ (DCFS #1399) 양식서를 해당 학교에 제시하는 거주지 학교 구역 밖에 살고 있는 모든 학생은 학교에 즉시 등록된다. (교육법 48853.5) AB 490조 규정에 의하면, 교육자, 학교 직원, 소셜 워커, 보호감찰원, 케어 제공자, 변호사, 청소년 법정관들은 서로 협력하여, 포스터 케어 아동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모, 보호자, 포스터케어 제공자, 소셜워커 그리고/또는 보호 감찰원은 아동의 이익을 최선으로 고려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결정할 때, 이를 교육구에 즉시 통지하고, 따라서 해당 교육구가 적정 기한 내에 학생 학교 기록을 옮길 수 있도록 한다. 학교 관련 포스터 케어에 대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포스터케어 부서에 (213) 241-3848로 연락하도록 한다.

무숙자 학생

McKinney-Vento 무숙자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지원법에 의하여, 취학 연령에 해당하는 모든 무숙자 아동들은 비-무숙자 아동에게 제공되는 무료 및 적절한 공립교육을 똑같이 받을 권리를 부여받는다.

무숙자 학생이란 고정된, 정기적으로 적절한 저녁 시간 주거지가 결핍된 2세와 18세 사이의 사람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그리고:

- 비상 또는 임시 보호처에 사는 학생을 의미한다; 방치된 건물, 주차된 차량 또는 인간의 정규 수면 숙식시설로서 지정되지 않은 건물에서 살고 있다;
- 경제 문제(예: 실업, 퇴거 또는 자연 재난)로 인해 주거지가 상실되어, 다른 가족들에 “엮혀서” 거주하는 경우;
- 호텔이나 모텔에서 살고 있다;
- 자신의 가족과 트레일러 팍이나 캠핑장에서 살고 있다;
- 병원에 버려졌다;
- 제한적 상황 하에 포스터홈에 위탁되기 위해 대기한 경우;
- 취학 연령인 미혼모나 임신부를 위한 숙소에서 살면서, 기타 다른 숙소가 가능치 않는 경우; 또는
- 위에 명시된 상황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무숙자에 해당되는 이주민 아동, 버려진 아동, 집에서 도망쳐 나오거나 쫓겨난 경우.

무숙자 학생은 최근에 재학한 학교(원래 다녔던 학교) 또는 임시 주거지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다. 교육구는 학부모/보호자/동반자 없는 무숙자 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격이 있으면 원래 학교로부터의 왕복 통학버스편을 제공한다.

법규에 의하면, 무숙자 학생을 즉시 등록시켜야 한다. 학교 기록이나 예방접종 기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새 학교에 등록을 방해할 수 없다. 이전에 다녔던 학교로부터 필요한 모든 기록을 요청하고 부모에게 자격이 있는 모든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의뢰해 주어야 하는 것은 학생이 새로이 등록한 학교의 책임이다.

학교 선택이나 등록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학부모/보호자는 학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분쟁 해결 절차 또는 추가 자원 그리고/또는 권리 옹호처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무숙자 교육 프로그램에 (213) 765-2880으로 연락하십시오.

공립학교 선택

연방법 2001년 *낙오자 없는 교육 No child Left Behind Act of 2001* 규정에 의하면 프로그램 개선(Program Improvement-PI) 학력부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공립 학교 선택(Public School Choice-PSC)”을 제공해야만 한다. PI 학교 또는 PI에 처해질 위험이 있는 학교의 재학생으로 식별된 학생은 비-프로그램 개선 학교로 전학할 옵션이 있다. 우선권은 “저소득층 가정의 최하 학력 미달 학생”에게 주어지지만 한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의 공립학교 선택은 초이스 책자(CHOICE brochure)를 통해 접할 수 있다. 초이스 책자는 11월 중순 LAUSD 재학생 거주지 주소에 직접 우송되며 신청서 마감일은 1월이다. 교육구가 부담하는 교통편은 비-프로그램 개선 학교에 제공되며 LAUSD 방침 및 시행세칙에 준하여 시행된다.

낙오자 없는 교육법에 의거하여 공립학교 초이스 학교로 전학한 학생은 캘리포니아 학교 대항 연합법규 제 214조에 의해(California Interscholastic Federation-CIF) 산하 학교 운동팀에 참가할 자격이 없을 것이며, 단지 비-프로그램 개선 학교에 2년째 등록한 경우는 예외이다.

질문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특별 자금 프로그램 부서에 (213) 241-6990으로 전화하십시오

보충 교육 서비스

연방법 2001년 *낙오자 없는 교육 법 (No child Left Behind Act of 2001)* 규정에 의하면 프로그램 개선 학교에 2년 이상 재학하고 있는 학생에게 “보충 교육 서비스(Supplemental Educational Services-SES)”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만 한다. 해당 프로그램 개선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유자격 학생으로 식별된 경우, 이 학생에게 “튜터링과 기타 학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승인 보충 교육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보충 교육 서비스”는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에서 접할 수 있으며, 매년 5월말 해당 학생의 가정에 직접 우편으로 보내지는 SES 책자를 통해서 시행된다. 보충 교육 서비스 책자에 포함된 신청서가 “보충 교육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유자격 학교들도 신청서를 가지고 있다. 유자격 학생의 부모에게 매년 요청서 제출 마감일들이 주어진다. 질문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Beyond the Bell 부서에 (213) 241-7900으로 전화하십시오.

대안 학교

캘리포니아 주법은 모든 교육구에 대안 학교를 제공하도록 위임했다. 교육법 제 58500항에 의하면, 학교 또는 학교내에 별도의 학급으로서의 대안학교는 다음을 위한 고안된 방식으로 운영된다:

- a) 자립, 솔선수범, 친절, 자연스러움, 자원 활용, 용기, 창의성, 책임 및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 가치 개발 기회의 최대화.
- b) 학생들은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을 때 가장 높은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

- c) 학습의욕이 높고, 자신이 관심있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공부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학습 상황을 유지한다. 이런 관심 분야는 학생 자신이 전적으로 개별적으로 시작할 것일 수도 있고, 학습 프로젝트를 주관한 교사가 전적으로 또는 일부 권할 것일 수도 있다.
- d) 교사, 학부모, 학생이 함께 협조하여 공부 방식 및 주제를 개발할 기회를 최대화한다. 이런 기회는 지속적이고 영구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 e) 지속적으로 학생, 교사, 부모는 변화하는 세상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화하며, 이에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부모, 학생 또는 교사가 대안학교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원하는 경우를 위해, 카운티 교육감, 해당 교육구 행정실 및 출석학교의 교장실에는 해당 법규 내용에 대한 사본이 준비되어 있다. 본 법규에 의하면, 관심있는 사람들은 해당 교육구 관할 위원회에 대안학교 설립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교육적 옵션 학교

캘리포니아 주법은 모든 교육구가 대안 학교를 제공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대안 학교는 보다 적은 규모 학교 그리고 보다 개별적인 학업 환경에서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최선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런 학교들은 교육적 옵션 부서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교육적 옵션 학교는 전통적인 일반 고교에서 학습 목표와 프로그램에서 낙오된 학생들을 위해 고안되었다. 옵션 학교는 학습 기준-중심(standard-based) 그리고 한 학년도 동안 언제라도 학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고안된 학교이다. 목표는 학교 종류와 개별적인 학생의 필요에 달려있지만, 고교 졸업장을 받고 졸업 시키거나 정규 학교로 다시 보내는 것이다.

추가 정보를 원한다면, 교육 옵션 부서(Educational Options Office)에 (213) 241-4586, 333 So. Beaudry Ave, Los Angeles CA 90017 로 연락한다.

학교 책무 보고서

교육법 제 35256조에 의하면, 교육구가 학교 책무 사항 보고서를 학교별로 매년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요구하는 경우, 해당 학교는 학교 보고서 사본을 제공하며, www.lausd.k12.ca.us에서 인터넷도 제공한다.



전학 권리

학생 출석 옵션

캘리포니아 법 [교육법 48980 (i)]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교육구는 교육구가 배정한 학교 이외의 다른 학교에서도 자녀가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정보를 새학년초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각 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등록 허가증(PERMIT) 및 전학

교육구는 개개 학생 및 가정의 필요를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등록 허가 방침의 모든 시행 영역에 인증 차별 금지 목표, 등록시킬 수 있는 학생수 및 비용 요인이 불가피하게 개입된다. 교장 및 학군별 담당 행정관은 등록 허가증 관련 정보를 학생, 학부모 및 커뮤니티에게 제공할 것이다. 등록 허가 신청서를 요청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한 장이 주어질 것이며; 어느 누구도 신청서 주는 것을 거부하거나 항소 절차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을 거절할 수 없다. 학생 서비스 및 출결석국의 등록 허가증 및 전학 부서는 교육구에 속한 학교에 대한 허가증 발급, 교육구과 교육구 사이에서 실시하는 등록 허가증 발급 거부에 대한 항소에 대한 행정상의 임무를 담당한다. 모든 질문 및 요청은 본 부서 (213) 745-1960으로 하십시오.

타교육구 사이의 등록 허가증 및 전학

타교육구로의 등록 허가/전학은 LAUSD와 타 교육구 사이에 전학을 허용한다. 타교육구 등록 허가/전학은 일년내내 발급될 수 있으며 매년 갱신해야 하며, 다만 취업 관련 전학은 매년 갱신할 필요 없다. 다음의 경우 등록 허가/전학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 학생을 받아들이는 교육구가 등록 허가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 자격을 심의하기 위해 제출한 정보가 허위성이 있을 경우
- 발급 시, 교육구의 인증 차별 금지 목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타교육구 사이의 등록 허가서/전학서를 발급하는데 허용되는 기준:

- 차일드 케어
- 계속적으로 등록하기 위해
- 건강
- 기회
- 학생수 과밀 학교
- 교육구 직원 프로그램
- 거주지 변경 예정
- 교통 및 안전
- 안전
- 상위 학년 신분
- 지정된 등록 허가 지역(컬버 시티 및 베버리 힐스)
- 학부모 직장-관련 전학
- 베버리 힐스 통합 교육구에서 실시하는 다문화 학생 전학 프로그램에 참여

교육구 내의 등록 허가 및 전학

교육구내의 등록 허가 신청서는 관할 학교에서 받을 수 있다. 학력, 출석 또는 적응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타학교로 전학시키는 것은 등록 허가를 통하기 보다는 오히려 기회 전학으로 처리될 수 있다. 이런 전학은 부모/보호자의 요청으로 시작된다. 전학서는 다음 사유 중 하나 이상의 이유를 근거로 발부될 수 있다.

- 등록을 희망하는 LAUSD 학교는 과밀학교로 지정됨
- 개방 등록 전학
- 형제 자매
- 계속적으로 등록하기 위해
- 차일드 케어
- 부모 직장-관련 전학
- 학생을 돌보는 사람의 위임 진술서(주거지)
- 거주지 변경 예정

- 의료적
- 인종 통합 및 기타 특별 프로그램
- 사회 적응 그리고/또는 보호

등록 허가서는 신청인이 자격이 있고, 해당 학교 행정관이 승인을 하고, 요청하는 학년에 공석이 있는 경우에 국한하여 허용될 것이다.



동등한 기회

차별 금지 성명서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는 불법 차별행위와 괴롭히는 행위가 없는 직업 및 학습 환경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교육구는 각 개인의 실질적 또는 인지된 성, 성적 성향, 성별(성 정체성, 결혼 여부, 임신, 자녀 분만이나 관련 의료 상태가 포함됨), 민족 유형 식별, 인종, 조상, 국적, 종교, 피부색, 정신 또는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그리고 이런 실질적 또는 인지된 특성 중 하나 이상을 지닌 사람이나 집단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이유를 근거로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에 언급된 보호된 영역에 속한 괴롭히는 행위(harassment)는 일종의 불법적인 차별이며 본 교육구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괴롭히는 행위는 학생/고용인을 대상으로 위협적이거나 학대적인 행위이며,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행위의 가해자인 학생이나 고용인은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괴롭히는 행위는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며, 언어 행위 및 욕, 시각적이거나 글로 제시한 내용,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창피를 주는 행위 가 이에 포함된다.

본 차별 금지 정책은 모든 교육구의 프로그램 및 활동의 참여 또는 접근도 또는 교육구 프로그램 및 활동의 처우 조치 또는 취업에 적용되며, 직업 교육에도 또한 적용된다. 영어력의 부족이 교육구 프로그램을 등록하거나 참여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 다른 형태의 불법적인 차별/괴롭히는 행위, 부적절한 행위 그리고/또는 중오 범죄를 금지하는 내용에 대한 추가 정보는 기타 교육구 방침에 명시되어 있고, 학교 및 사무실에서 받아볼 수 있다. 교육적인 서비스 및 기회 제공시 불법적인 차별로부터 최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런 모든 방침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 본 교육구의 의도이다. 본 교육구는 고소로 제기한 사람 또는 고소 내용 조사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보복 행위를 금한다.

학생의 성별을 근거로 한 차별 또는 괴롭히는 행위(타이틀 IX); 성적 기호도 또는 성 정체성(타이틀 5, CCR 제 4910조); 인종, 피부색, 국적(타이틀 VI); 또는 정신 또는 신체 장애(제 540조) 관련하여 도움이나 이의 제기 고소내용은 교육적 평등성 준수부서(Educational Equity Compliance Office)에 (213) 241-7682로 연락한다.

타이틀 IX 및 학생

연방법, 타이틀 IX, 주법 및 교육구 방침은 실질적 또는 인지된 성, 성적 기호, 남녀 성별(성 정체성, 결혼 여부, 임신, 자녀 분만이나 관련 의료 상태가 포함됨)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학생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남학생과 여학생은 해당 학교에서 동등한 교육 기회에 대한 권리를 지니며, 다음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 운동
- 수강하는 클래스
- 학급에서 받는 대우
- 상담의 종류
- 참여할 수 있는 교내 과외 활동
- 참여할 수 있는 영예상, 특별상, 장학금 및 졸업 활동

결혼 여부에 관계 없이, 임신부 학생과 자녀를 양육하는 학생은 교육구 학교를 재학할 권리가 있으며, 타학생과 마찬가지로, 차별 또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학교 환경에서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에 매그넷 학교, 특수교육, 영재, 사립학교 그리고 기타 특별 학교나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임신부 학생과 자녀를 양육하는 학생이 미성년 임신부 학교 또는 Cal SAFE 프로그램과 같은 특별히 고안된 학교나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경우, 학생측이 전적으로 자원하는 경우에만 국한된다. 클래스, 프로그램과 학습자료는 반드시 타학생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해야 하며 그리고/또는 교육을 완성시킬 수 있는 클래스를 수강할 기회를 이런 학생들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임산부 학생과 미혼모 학생은 학교 활동에 완전히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임신부 학생의 교정 내의 안전을 위해 적당한 편의조치를 취하고, 이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도와주는 것은 학교의 책임이다. 이런 편의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시설물 및 교실 옮길 때 필요한 시간을 추가로 제공한다; 출산 및 회복으로 인한 결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변화를 추적하고, 탁아 문제를 도와준다; 학생/가족이 요청하는 경우, 임신 관련 질병, 회복으로 인해 결석하는 동안 독립 학습 활동을 제공한다; 임신부 학생 또는 심대 부모를 타학교에 차일드 케어를 제공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타지역으로 몰아내지 않는다.

합당한 사유로 인한 결석, 예를 들면 임신-관련 질병, 학생이 양육권자인 자녀의 질병이나 의료 약속 관련 치료를 해야하는 임신한 학생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학생은 합당한 사유로 결석하는 기타 학생들과 동일하게 처우받는다. 합당한 사유로 결석한 학생은 결석 기간동안 못한 과제나 시험을 완성하거나 못한 과제에 적절히 동등한 과제를 완성하도록 허용되며, 적정 기간 동안 해당 과정을 만족할 정도로 완성시키는 경우 완전한 성적이 주어진다. 임신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심대 학생과 관련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교육구 심대 학부모 프로그램(Teen Parent Programs)에 (213) 765-2880으로 연락하시오.

학생은 학교 행정관, 카운슬러나 학교에서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말함으로써 상황을 정정을 시도하거나 고소장(균일 고소 절차를 참고하시오)을 접수시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없다. 학생들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타이틀 IX 조항에 저촉되는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되는 학생은 고소장을 접수시킬 권리가 있다. 가급적, 해당 학생에게 학교 자체에서 고소건을 해결해 볼 것을 권한다. 추가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교육적 평등성 준수부서(Educational Equity Compliance Office)에

제 504조 하의 장애/의료 상태 학생

1973년에 제정된 재활법(제 504조) 제 504조는 연방 민권법이며, 미 문교부로부터 재정 보조를 받아 실시하는 프로그램 및 활동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 대우를 금지한다. 장애를 근거로, 개인 대상으로 어떤 형태의 차별/괴롭힘은 허용될 수 없으며,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교육구는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괴롭힘 관련 모든 이의 고소를 즉시 조사할 것이며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사건의 재발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제 504조는 장애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FAFE). 특수 교육 서비스는 필요하지 않지만 제 504조 하의 연방정부의 장애인 정의를 충족시키는 학생들을 위해, 제 504조 계획안(Section 504 Plan)은 편의조치, 보충 지원 그리고/또는 서비스를 표시하기 위해 작성되며, 이는 학생이 일반 교육 프로그램을 접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제공될 것이다. 장애 판별, 심의, 그리고/또는 학교 및 학급 배정 및 제 504조에 명시된 항소권에 관하여 교육구가 내린 결정 사항을 학부모 또는 보호자들은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받을 것이다.

제 504조에 대한 정보 그리고/또는 제 504조 관련 항소서나 고소장을 접수시키는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다음으로 연락한다. 교육적 형평성 준수 부서(Educational Equity Compliance Office), 전화 번호 (213) 241-7682.

장애 학생 및 특수 교육

아동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배우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통적인 학교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공부한다. 하지만, 장애 학생은 일반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편의조치 및 수정조치를 초월하는 서비스를 때로는 필요로 한다. 장애 학생은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팀에 의해 결정된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으며 이 팀은 학생의 부모도 포함된다. 특수 교육 서비스는 특수한 교육적 필요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고안되었고 부모의 재정적 부담은 없다. 최대 적절한 범위에서, 장애 학생은 반드시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자신이 장애인이 아니었으면 다녔을 일반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취학 연령의 자녀가 장애가 있을 수 있고, 특수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면, 부모는 인근 공립학교 행정관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다섯 살 미만의 자녀가 장애가 있을 수 있고, 특수 교육 서비스 자격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유아/프리스쿨 지원 서비스 부서에 (213) 241-4713으로 연락한다.

특수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는 교육구 발행물 즉, 특수 교육 서비스에 대한 학부모 안내서(절차상의 권리 및 안전 조치 포함)에 제공되어 있고, 교육구 학교 및 특수 교육 부서 웹사이트에서도 제공된다: <http://sped.lausd.net/>. 특수 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면, 해당 학교 행정관이나 특수 교육 지원 부서 행정관(Special Education Support Unit Administrator)소교육구 특수 교육 코ордин이터에 연락하거나 특수 교육 부서에 (213) 241-6701로 연락하도록 한다.



학부모의 권리

학부모 권리

교육법 제 51101에 의하면, 공립학교 재학생의 부모/보호자들은 자녀의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돕기 위해 학교와 협조하고 존중하는 파트너 관계로 노력할 권리가 있다.

다음은 학부모/보호자들의 권리에 관한 내용이다:

- 자녀가 현재 등록되어 있거나 앞으로 등록할 학급(들)을 관찰할 권리
- 자녀의 교사(들)와 교장을 만나볼 수 있는 권리
- 부모들은 학교 시설 및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교육구 직원의 감독 하에 그들의 시간과 자원을 자원봉사할 권리
- 자녀가 부모의 허락없이 결석한 경우 이를 통지받을 권리
- 자녀의 표준고사 점수, 주학력고사 점수, 학교 성적의 결과를 받을 권리
- 특정 학교 입학에 요청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받을 권리(이런 요청을 교육구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 자녀가 안전하고 배움을 장려하는 학교 환경에서 교육 받을 권리
- 자녀가 등록한 학급의 수업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권리
- 자녀의 진전 경과 그리고 자녀가 개입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학교 담당인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
- 자녀의 학교 기록을 접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에 대한 부정확, 허위 또는 자녀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침해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학교로부터 이의에 대한 응답을 받을 권리
- 자녀가 성취하도록 기대되는 학습기준, 능숙도, 실력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
- 학교 규칙, 출결석 방침, 복장 규정, 학교 방문 절차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받을 권리
- 학교가 자녀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모든 심리학적 검사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와 이런 검사에 대한 허락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 학부모 자문위, 학교자율위, 학교-중심 운영 지도위에 이런 단체의 회원을 관할하는 모든 정관 및 규칙에 의거하여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학부모 참여

주 교육부 방침 #89-01

학부모 참여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연구조사에 의하면, 부모가 가정에서 그리고 자녀 교육에 참여하면 학력이 향상된다는 점이 확실히 나타났다. 더불어, 부모가 자녀의 학교에서 참여하는 경우, 더 나아가서 보다 좋은 학교로 진학한다.

중요한 사실:

1. 가족은 주요 교육 환경이다.
2. 자녀 교육에 부모가 참여하면 학력이 향상된다.

3. 부모 참여는 오랜기간 동안 잘 계획하여 종합적 지원될 때 가장 효과적이다.
4. 부모의 참여로 인한 혜택은 조기 유아 교육이나 초등학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효과를 나타낸다.
5. 부모가 자녀를 가정에서만 돕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커뮤니티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부모는 반드시 학교에 전반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6. 가정의 소득 또는 교육 수준 보다는 부모의 자녀 교육 참여 범위가 학생의 성공에 더 중요하다.
7. 학교와 가정을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서는 안된다. 가정과 학교는 자녀가 학교라는 세상에 적응하도록 협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양한 문화와 언어 배경의 가정의 자녀일 경우, 이런 점은 필수불가결하다.

학부모 참여 방침

로스앤젤레스통합 교육구는 학교와 부모가 강력한 파트너십을 형성할 때 성공적인 학업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교사와 학교 행정관들은 학부모와 커뮤니티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행상의 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잘 알게 되었다. 부모들은 학교 학습 프로그램의 범위에 대하여 알게 되고 이로서 자녀에 대하여 높은 기대치를 설정한다. 그 결과, 학교는 학생의 성장과 성공에 보다 주력하게 된다. 이런 파트너십에 학부모를 참여시키는 책임은 학교에 있다. 그러므로, LAUSD는 다양한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부모들이 전학년에 걸쳐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학교가 이에 개입할 것을 요구한다. 본 프로그램은 소 교육구 및 학부모 커뮤니티 서비스 부서를 통하여 조정되며, 전화 번호는 (213) 217-5772 또는 (866) 669-7272이다. 더불어, 특수교육 부서는 장애 학생의 부모를 위한 3개의 리소스를 후원하여 자녀 교육 참여를 장려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문의사항은 (213) 241-6701로 연락한다.

부모의 알 권리

낙오자 없는 교육(No Child Left Behind-NCLB) 법규에 의하면, 요청이 있는 경우, 부모는 자녀의 필수 학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의 전문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음을 부모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런 정보가 포함된다:

- 교사가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종류
- 교사의 대학 학위(들) 그리고 전공(들) 교사의 대학

부모는 자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 교사의 전문 자격 내 용에 대한 정보도 요청할 수 있다.

더불어, 학교는 *NCLB* 조건에 미달되는 교사가 자녀의 필수 학과목을 연속 4주 이상 가르치거나 배정된 경우, 부모에게 적정 기간 내에 이를 통지해야만 한다.

학교 일정 스케줄

교육법 제 49066 항에 의하면 단축수업일과 교직원 전문성 개발을 위한 학교 휴일 일자를 해당 학교의 재학생 부모 및 보호자에게 통지하며 그리고 만약 단축수업일과 학교 휴일 교직원 개발일이 차후에 정해진 경우, 운영위는 가급적 신속히 해당 학생의 부모와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지만 정해진 단축수업일이나 학생 수업 없는 일자로부터 적어도 한달 전에

통지한다.

학생 성적 점수 변경을 요청할 부모의 권리

교육법 제 49066에 의하면, 다음의 근거 하에, 자녀의 성적 점수 변경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오류;
- 사기;
- 불성실; 그리고/또는
- 성적 책정을 할 능력이 없음.

공립학교에서 이수한 학과목에 대한 성적이 취득될 때, 각 학생의 성적은 해당 과목 교사에 의해 정해진다. 위에 명시된 근거가 없을 때에는 해당 성적은 최종 성적이다.

성적 변경에 대한 요청은 성적표가 우송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학급 교사에게 먼저 해야만 한다. 교사와 잘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다음 단계는 교장에서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 해당 결정 소교육구에 항소할 수 있고 그리고 최종 단계로서는 학습 부서에(**Office of Instruction**) 항소하는 것이다. 각 단계마다, 부모는 변경을 요청하는 타당성 관련 정보를 제시할 권리가 있다. 추가 정보를 원할 경우, 교장에게 문의하거나 관할 교육구에 연락하여 학생 성적 변경 요청서(**Request to Change Pupil Grades Bulletin**) 사본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서류 번호는 BUL-1926이다.

언론 공개

때때로, 뉴스 언론인들은 운동 경기, 학교 집회, 특별 프로그램 그리고 뉴스거리가 되는 행사를 보도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할 수 있다. 가급적, 학교는 자녀의 언론 접촉을 허락, 보류할 기회를 사전에 제공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법규에 의하면, 뉴스 언론매체가 합법적으로 교정에 있는 경우, 그들은 학생들을 인터뷰, 사진 촬영 그리고/또는 영상화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보호자는 자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영상 및 사진 촬영 허락을 거부 또는 보류할 수 있다. 더불어, 학생 자신도 언론을 상대로 말하기를 거절할 수 있고, 인터뷰, 영화 및 사진 촬영의 대상이 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출결석

학교 출석은 학생의 학력 성취에 절대적인 요소이다. 출석률이 양호한 학생은 학업면과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더 많다.

학교에 출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 학교에 출석하면, 성적 및 표준 학력고사 점수가 좋아지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
- 학생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출석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고용주들에 의하면, 출석은 책임감을 나타내며, 고용인을 채용, 승진시킬 때 주요 요소가 된다고 한다. 이는 책임감을 나타낸다.
-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부모 및 보호자는 자녀를 학교에 출석시킬 책임이 있다. 캘리포니아 법규에 의하면, 합당한 사유없이 3번 결석 그리고/또는 1일 학교 시간동안 30분 이상 지각한 경우, 무단 결석으로 간주한다.

LAUSD는 학생들이 매일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우호적이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출석을 향상 위한 장려책을 개발 중이다.

부모가 출석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 가족 휴가는 학교 가지 않은 날로 계획한다.
- 비긴급 의료 및 치과 예약은 방과후로 정한다.
- 낮시간 동안 자녀의 학교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휴대폰 전화번호 그리고/또는 이메일 주소도 포함시킨다.
- 자녀의 교사와 자주 의사소통한다.
- 자녀의 결석 사유가 될 만한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학교에 알린다.

타당한 결석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생은 매일 학교에 출석해야 한다. (교육법 EC 48200) “부모가 허용한 무단 결석”을 자녀에게 용인하지 않는다. 이런 무단 결석은 법이 허용하지 않은 결석 사유로 가장 잘 설명된다.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개인 용무
- 차량 문제
- 입힐 만한 깨끗한 옷이 없음
- 비
- 데모 행진/웍아웃

무단 결석

의무 교육을 풀타임으로 받아야 하는 학생 또는 연속 의무 교육의 대상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한 학년도동안 3일을 전체 결석하였거나, 타당한 사유 없이 한 학년도에 30분 이상의 지각 또는 결석을 3번 한 경우, 또는 위의 내용을 어떤식으로든 합한 경우, 해당인은 무단 결석이 되며 출석 담당인 또는 교육구 교육감에게 보고될 것이다. (교육법 EC 48260) 부모는 자녀가 제 1차 무단 결석생으로 기록되었음을 통지받는다;

의무 규정인 제 1차 무단 결석생 통지서 내용:

- 부모나 보호자는 학생을 학교에 출석시킬 의무가 있다.
- 이런 의무를 불이행한 부모나 보호자는 위반사항에 대해 유죄이며 기소될 수 있다.
- 대안 교육 프로그램이 해당 교육구에서 제공될 수 있다.
- 부모나 보호자는 학생의 무단 결석을 해결하기 위해 담당 교직원과 만날 권리가 있다.
- 해당 학생은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해당 학생은 윤전 특권의 중지, 제한, 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부모나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학교에 와서 하루 동안 학생과 함께 수업을 참관할 것을 권고받는다.

담당 교육구 직원 또는 요원이 부모나 보호자 그리고 학생과 적어도 1회의 컨퍼런스를 실시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한 후, 한 학년도동안 3번 이상 무단 결석한 것으로 보고된 학생은 **상습 무단 결석생(habitual truant)**으로 간주된다.

상습 무단 결석생으로 간주되거나 정기적으로 학교를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 시 상습적으로 비복종 또는 무질서한 행위를 하는 학생은 학교 출결석 심의 위원회 (School Attendance Review Board-SARB)에 회부될 수 있다. 해당 통지서에는 해당 학생과 부모 또는 보호자는 학교 출결석 심의위에 와서 면담을 받도록

요구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소 교육구에서 SARB가 열린다.

무단 결석이라고 보고된 학생은 주말 중 1일 열리는 수업에 출석하여 수업을 보충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토요일 학교 프로그램).

부모, 보호자 기타 사람이 계속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학교 출결석 심의위의 지시 또는 제공된 서비스를 불이행하는 경우, 출결석 심의위는 교육구에 이를 신고하여 부모, 보호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한 형법 고소장을 해당 법정에 접수시키고, 이런 기소 사항이 해당 기관에 의해 공소되는 것을 점검한다.

교육구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찰청과 로스앤젤레스 시 검찰청과 파트너십을 결성하여, 무단 결석생의 부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당한 사유 있는 결석

다음의 경우 학생은 결석을 할 수 있다:

- 몸이 아픈 경우
- 카운티 또는 시정부 보건부의 지시 하의 격리
- 의료, 치과, 안과 또는 척추 의료 서비스 치료의 목적
- 직계 가족의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서, 장례식이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경우 1일 이하, 그리고 캘리포니아 이외의 타주에서 열리는 경우 3일 이하로 인정한다
- 법 규정에 따른 배심원 의무 수행 목적
- 학생 자신이 양육 부모여서 학교 시간 내에 자신의 자녀의 질병 또는 의료 예약으로 결석해야 하는 경우.
- 합당한 개별적 사유로서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으며, 법정 출두, 장례식 참석, 종교적 명절 및 의식, 종교적 피정 기간, 취업 컨퍼런스에 참여이며, 부모가 결석을 서면으로 요청하였고 교장 또는 담당인이 승인을 한 경우이다
- 교육법 제 12302조에 의거하여, 선거구 멤버로서 서비스할 목적인 경우.

위에 언급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결석하는 학생은 결석동안 하지 못한 과제 및 숙제의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주어진 경우 완성하도록 허용되며, 만족스럽게 완성한 경우, 정상시와 동일하게 학점이 수여된다. 결석한 수업의 담당 교사가 과제의 내용과 해당 과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한다. 테스트 및 과제는 결석 기간동안 하지 못한 테스트 및 과제와 적당하게 상응하는 내용이지만, 동일한 내용일 필요는 없다. 합당한 사유로 결석한 학생은 토요일 수업을 수강하면서 과제를 보충할 수 있다.

결석 사유

C.C.R. 타이틀 5, 제 306조 –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이 1일 수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석 또는 지각할 때마다 부모나 직접 만나거나서 글로 만족할 만한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결석할 때마다 사유서를 제공해줄 것을 학부모에게 부탁드린다!

정당한 사유 없는 결석

정당한 결석으로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결석은 근거 없는 결석으로 간주된다. 법에 준하여, 교육구는 모든 결석 관련 설명(서면 또는 구두로 정당성을 설명)을 알아내어야 한다. 부모는 설명되지 않은 결석에 대해 서신을 받을 것이다. 만약 10일 내에 결석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무단 결석으로 회부될 것이다. 이는 SARB 의뢰 그리고 시 또는 교육구 변호로부터 기소를 당할 근거가 될 수 있다.

종교적 사유로 인한 결석

학교에 출석해야 하는 일자에 종교 명절을 준수하는 종교인 경우, 교장이 명시하는 바와 같이 사전에 주선하여 결석이 허용될 수 있다[교육법 제 48205 (a)(7)]. 또한, 종교적 피정에 참석하기 위해 결석할 수 있지만 매학기 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교육법 제 48205 (c)]. 위의 사항은 정당한 사유 있는 결석으로 간주된다. 그런 사유로 결석한 학생은 하지 못한 공부를 해야 하는 책임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종교적 사유로 인한 결석 면제 프로그램

다음의 조건이 준수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서면상의 동의서를 수반한 3학년-5(K-5 학교제 편성)학년생 또는 4-6학년생(K-6 학교제 편성)은 학교 이외의 지역에서 도덕 및 종교 교육을 받을 목적으로 결석이 허용될 수 있으며, 이는 교육위원회 법규 2125 그리고 교육법 제 46014조에 의거한 것이다:

- 해당 학교는 종교적 사유로 인한 결석 면제(Religious Released-Time)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 학교 일주일 동안 40분 미만으로 허용된다.
- 해당 목적을 위하여 학교 1개월마다 4일을 초과하는 결석이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 각 학생은 적어도 각학년에 준한 최소 학교 일만큼 학교에 다닌다.
- 하루 중 면제 시간은 교장에 의해 결정되며, 매주 학교일에는 같은 시간에 일개 교실에서 실시되며 이것은 학급 중단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전적 배상/학부모 채무

민법 제 1714.01조에 의하면, 양육권 및 통제권이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는 미성년의 의도적인 비행으로 인해 초래된 타인의 재산 손상에 대해 공동 그리고 개별적인 책임이 있으며 의도적인 비행으로 초래된 2만5천불이 초과되지 않은 손상에 대해 책임이 있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48904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학교가 대여한 물품, 비상한 물품, 또는 미성년자가 고의적으로 손상한 물품에 대하여 해당 교육구 또는 사립 학교에게 배상 책임을 진다.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가 피해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거나 해당 물품을 되돌려 줄 때까지, 해당 학생의 성적, 졸업장, 또는 성적 증명서를 보류하는 방침을 관할 학교가 채택하도록 법은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부동산, 동산에 관계없이 교육구 또는 학교 직원이 소유한 어떠한 재산을 칼로 세기거나, 외관을 손상하거나, 피해를 주거나, 되돌려 주지 않거나, 손괴하는 경우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으면서, 이런 경우 배상을 추구하는 것이 로스앤젤레스 교육구의 방침이다. 학생의 부모/보호자는 2만5천불을 초과하지 않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위기 관리 및 보험 서비스 소속 배상부서(Restitution Unit)는 이런 배상권 소추를 담당한다.

부모(들)/보호자(들)은 통지를 받는 당시, 잔여 채무를 지급하거나, 학생은 학교가 정하는 작업 과제를 자발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해당 물건이나 잔여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배상부서는 해당 부모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소액 청구권을 접수시킬 것이다. 부모나 보호자가 법정 판결액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 소유주-채무인(owner-debtor)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학교 기록을 접할 기회

가정의 교육적 권리 및 사생활 보호권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법 및 주법

학교 기록은 연방법과 주법에 의거하여 그 비밀이 보장되며, 이에 속하는 기록은 지역 학교나 교육구 중앙본부에서 보관하는 모든 종류의 서면 기록이 거의 다 포함한다. 이런 기록에는 출결석, 보건, 성적, 품행, 운동능력이나 학급활동이 있다. 법규에 의하면, 부모나 학생(18세 이상)의 서면상의 허락 없이는 학생 기록 정보 공개를 금한다. 학교 직원이 개별 참고 사항 또는 용도 목적만으로 보관하는 기록이나 정보는 학생 기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연방법 및 사생활 보호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에 의해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친부모, 양부모, 법적 보호인은 해당 자녀의 학생 기록을 접하고 검토할 수 있다. 또한, 16세 이상(또는 10학년을 마친) 학생은 자신의 기록을 접하고 검토할 권리가 있다. 합법적인 교육적 이익을 가진 학교 및 교육구 그리고 공직원은 부모나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 기록을 접할 권리가 있다. “합법적인 교육적 이익”이란 직원/공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학생의 기록 정보를 접할 필요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기타 개인이나 기관들은 법정 명령 또는 법규에 의해 학생 기록을 접하고, 검토하며 그리고/또는 취득할 수 있는 허락이 주어진다.

안내용 정보(directory information)은 교육구가 보관하고 있는 학생 관련 일상 정보이다. 이것은 학생 기록 정보로 간주되지 않으며 학생 기록 정보와 동일한 수준의 비밀 유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교육구는 특정 정보를 안내용 정보로 식별할 수 있고, 교육구가 이런 정보를 합법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식별된 개인, 공무원 및 단체에 안내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법규에 명시되어 있다. (뒷장 안면을 참고하십시오) 학부모 그리고/또는 성인 학생은 안내용 정보의 어떤 부분의 공개 제한 또는 거절할 권리가 있다. 더불어, 학부모 그리고/또는 성인 학생은 특정 수령인에게 안내용 정보 공개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학생 관련 안내용 정보 중 다음 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는 요청시 특정 수령인에게 공개될 수 있으며, 다만 공개하지 말라는 서면상의 요청서가 서류화되어 있는 경우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다.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생년월일
- 출석 날짜

- 그전에 재학했던 학교(들)

학생 기록(Pupil Records)의 보관 장소

대부분의 학생 기록은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보관되어 있다. 초등학교가 보관하는 학생 기록은 교장이 기록 보관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메인 오피스에 보관하는 것이 상례이다. 중학교에서는 대개의 경우 해당 정보를 아래 명시한 바와 같이 보관한다.

1. 학생의 보건 관련 교육 기록은 학교 간호사가 직접 관리하는 보관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양호실에 보관된다.
2. 성적, 상담 또는 보충 지도와 관련있는 교육 기록은 학생 상담 서비스 담당 교감이 직접 관리하는 보관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상담 부서에 보관한다.
3. 출석 관련 교육 기록은 학생 보조 서비스를 담당하는 교감이 직접 관리하는 보관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출석 부서에 보관한다.
4. 운동 활동 관련 교육 기록은 체육 교육 지도 교사가 직접 관리하는 보관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체육 교육 부서에 보관한다.
5. 수업 활동과 관련 있는 교육 기록은 담당 교사가 직접 관리하는 보관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해당 교실에 보관한다.
6. 특수교육 IEP 는 학생 종합 기록부(student's cum folder)에 보관된다.

징계, 특수 교육, 심리 기록과 같은 학생 기록의 일부는 소교육구 또는 중앙 교육구에 보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

학생 기록 정보에 대한 이의 제기

- A. 학생 기록의 일부 또는 전체의 검사/검토는 정규 학교 시간에 행해지며, 학부모(또는 해당되는 경우 학생과)와 학교 직원이 상호 편리한 시간으로 주선될 것이다. 교육구 유자격 직원이 반드시 참석하여 서류 보관인의 역할을 하면서 도와주어야 한다. 일개 학생의 학생 기록이 다른 학생 관련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런 자료를 검사 및 검토를 원하는 부모(또는 학생, 해당되는 경우)는 당사자 부모의 자녀와 관련된 부분만을 볼 수 있다. 부모(또는 학생, 해당되는 경우) 교육 기록의 일부분 또는 전체 내용에 대한 사본을 요청할 경우, 해당 학교가 사본을 제공할 것이며, 또는 소교육구 부서는 요청한 사본의 첫 페이지는 25센트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10센트의 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가주 교육법 제 49070조에 의하면, 부모(또는 학생이었던 사람)는 다음의 기록 정보(성적 점수 이외의)의 제거 또는 정정에 대한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해당 학생 기록의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틀린 정보
2. 확증 없는 개인적인 결론이나 추정
3. 외부의 비전문인에 의한 결론이나 추정
4. 기록된 관찰 내용의 시간, 장소, 관찰인의 성명이 명시되지 않은 개인적인 관찰내용을 근거로 한 경우
5. 오해시키는 내용
6. 학생의 사생활 권리나 기타 권리를 저촉하는 내용

부모는 우선적으로 교장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교육 기록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학

교 교장이 부모가 제기한 이의를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록은 정정되거나 제거될 것이다. 만약 교장이 부모의 이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부모는 항소할 수 있다. 학교 교장의 결정에 반대하는 항소는 소 교육구 교육감에게 제기하고 그 다음 단계로 교육 위원회에 제기하게 된다. 소교육구 교육감과 교육위는 중립적인 패널 회의를 소집하여 해당 이의 제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질의를 실시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패널이 부모의 이의를 인정하는 경우, 이의 제기된 자료는 정정 또는 제거 및 소멸될 것이다. 만약 부모의 이의가 최종적으로 거부된 경우, 부모는 해당 정보에 대해 부모가 이의를 제기했다는 서면 진술서를 제공할 권리가 있다. 이의 제기된 정보가 변경 또는 제거되지 않는 한, 변경이나 제거될 때까지, 이런 진술서는 학생의 학교 기록의 일부가 된다.

- B.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49066조에 의하면, 사무 또는 기계상의 오류, 사기, 불성실, 무능력의 경우가 아니라면, 교사가 학생에게 내린 성적은 최종적이다. 성적에 대한 이의 제기는 캘리포니아 법규 및 LAUSD 방침에 의거하여 실시될 것이다. 성적 변경 요청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참고하시오.
- C. 교직원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 또는 정보는 대리인을 제외한 타인들이 접할 수 없으며, 다만 개인용으로 참고 또는 사용을 위한 것이며, 부모 또는 성인 학생이 조사, 검토 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교육적 기록이 아니다.
- D. 학생이 등록하기를 원하거나 등록 의사가 있는 학교가 요청하는 경우, 학생의 교육적 기록은 해당 학교로 보내진다.

고소 제기

권리 및 사생활 보호권에 대한 교육구 절차 관련 고소장을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 그리고/또는 가족 정책 준수 부서, 미 문교부로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부모에게 있다, Family Policy Compliance Office, U.S. Department of Education, 400 Maryland Avenue, Washington, D.C. 20201



학생의 권리 및 의무

학교 대항 운동경기

LAUSD 학교 대항 운동부 (Interscholastic Athletics Office)는 중학교 교내 프로그램(Middle School Intramural Program) 뿐만 아니라 고교 운동 프로그램도 주관한다. 이 두개 프로그램 모두 학업과 운동사이의 결합을 장려하고, 스포츠 참여 가치를 육성하도록 고안되었고,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격과 존중으로 처우받도록 확인한다. 학교 대항 운동경기 참여는 모든 고교생에게 제공되며, 이에는 스펠 학교와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싱글-사이트 매그넷 학교도 포함된다. 학생들은 캘리포니아 학교 대항 연맹 및 LAUSD 학교 대항 운동 위원회에 의해 정해진 자격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참여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학생은 반드시 내신을 최소 2.0으로 유지하고, 매년 신체 검진을 통과하며 이머전시 카드를

제출해야만 한다. 더불어 캘리포니아 교육법에 의해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보험 증서도 제출해야만 한다. 운동 학생은 스테로이드 사용 금지서와 품행서에도 반드시 서명해야만 한다. 부모는 위험 경고 확인서(Acknowledgement of Risk Warning)와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한다.

학생은 전학 방침에 준하여, 9학년부터 12학년 사이에 전학하는 경우 자격을 새학교로 가져갈 수도 있다. 전학 당시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한다. 고교 운동 프로그램 및 증빙 서류에 대한 추가 정보는 CIF 로스앤젤레스 시 세션 웹사이트 www.cif-la.org에서 검색할 수 있다. 학교 대항 운동 프로그램 및 중학교 교내 대항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원한다면 학교 대항 운동부에 213-207-2200으로 연락하시오.

학생과의 관계

교육구는 긍정적이고, 전문적이며 비-착취적인 교직원-학생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한다. 부적절한 교직원-학생 관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학생의 품행

캘리포니아 규제법 타이틀 5의 제 300조에 의하면, 학생은 학교 규칙을 준수하고, 모든 지시를 복종하고, 열심히 공부하며, 교사와 권위있는 타인에게 예의바르게 대하고, 음용하거나 상스러운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교육법 제 44807에 의하면, 공립학교 교사는 등하교 시, 운동장 또는 휴식시간 동안 학생에게 학생의 품행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벌(예, 신체 고통을 유발함) 금지한다. 교사, 교감, 교장 또는 기타 자격증 소지 교육구 직원이 그의 해당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부모가 자녀의 신체에 취할 수 있는 특권과 동일한 정도로 신체 규제를 행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질서 유지, 재산 보호 또는 학생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당하고 적절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타당히 필요한 신체적인 규제 양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런 신체적인 규제 수행으로 인하여, 해당인은 형사 소추 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본 조항의 규정은 첨부 사항이며 제 49000조의 규정을 우세적으로 대체하지는 않는다.

왕따 금지 방침

LAUSD는 안전한 직장 및 학업 환경을 제공하도록 전심전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교육구 관할권에 속하는 학생, 고용인 또는 기타 사람들의 안전과 복지에 저촉이 되는 왕따 행위 또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왕따 행위가 신고된 경우 이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복행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교육구 방침에 의거하여, 모든 학교 및 교직원은 상호 존중, 용납 및 수용 의식을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공립학교에 속하는 모든 프라이머리, 초등학교, 중고교의 학생들과 교직원은 안전, 안정, 평온한 교정에서 근무하고 공부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 1조, 28(c)항)

왕따는 (bullying) 관련 학생들 사이에 실제로 있는 또는 인식 상태에서 신체나 심리적 힘의 불균형이 개입된 공격적 행동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행동은 오랜기간 동안 반복되고 상처가 되는 언어 그리고/또는 행위를 통해 발생한다.

왕따 행동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언어: 상처가 되는 욕, 괴롭히기, 뒤에서 헐뜯기, 헐박, 무례한 잡음, 상처가 되는 소문 퍼트리기.
- 비언어: 일부러 꾸민 태도, 갱 신호, 결눈질, 뺨히 쳐다보기, 뒷따라 다니기, 물건 손괴, 낙서, 부적절한 몸짓 또는 행동을 보이거나 이런 것으로 협박하기.
- 신체적: 때리기, 주먹을 때리기, 밀기, 밀치기, 쿡 치르기, 발로 차기, 발을 걸어 넘어트리기, 목 조르기, 머리카락 잡아당기기, 싸움질, 심하게 때리기, 침 뱉기, 건물 파괴.
- 정서(심리적): 거절하기, 겁주기, 돈 빼앗기, 명예 훼손, 협박하기, 모욕주기, 공갈하기, 우정을 이용하기, 따돌림, 눈총주기, 또래 압력 사용, 인격에 등급 매기기.
- 인터넷 왕따: 전화나 이메일, 웹사이트, 또는 기타 전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모욕적이거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

행정관과 교직원은 학교 관련인 모두가 왕따는 부적절한 것이며 용납되지 않는다 점을 전체 학교 커뮤니티가 이해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학생들도 안전한 교육 환경을 도모할 책임이 있다.

- 왕따 행동, 행위, 언어에 어떤 식으로도 개입하지 않는다.
-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 자신의 행위나 말이 타인에게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조심한다.
- 왕따 행동은 신뢰하는 성인에게 보고한다.
- 보복 행위에 절대 개입하지 않으며, 자신을 대신하여 보복행위를 부탁, 권유, 동의하지 않는다.

왕따 관련 사안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면, 다음의 교육구 해당 부서들 중 한 곳으로 연락한다:

교육적 균등 기회 준수 부서: (213) 241-7682

보건 교육 프로그램 부서: (213) 241-3508

소교육구 운영 부서 - 운영 코ордин이터

학생 훈육 절차 부서: (213) 763-7450

성희롱 관련 정책

성희롱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작업 환경 및 교육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정책이다. 교육구 직원 또는 학생에 대한 성희롱, 또는 그들에 의해 행해진 성희롱은 성차별의 한 형태이며 성별을 근거로 차별 대우를 할 경우 성희롱 행위는 구성되며, 이런 사유로 주 및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본 정책에 저촉된다.

교육구는 성희롱을 중대 범법 행위로 간주하며 범법 행위를 초래한 직원에게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해당 행위를 저지른 4-12학년 학생에게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유치원과 1-3학년생은 기타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신이 성희롱의 피해자라고 믿는 교육구 학생 및 직원들은 해당 기관(해당 부서 또는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기할 것을 촉구하며, 그리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고소 사항은 신속히 수사되며 관련 당사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성희롱 고소인 또는 고소 관련 수사에 관련된 사람에 대한 보복 행위를 교육구는 금지한다. 모든 고소인에게 민법 구제 해결 조치가 있음을 추가로 알린다.

달감지 않은 성적 접근: 성적 행위에 대한 요구; 기타 언어적, 시각적 성적 내용, 또는 성적 내용이 담긴 육체적인 행위가 직업

또는 교육 장소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그런 장소에서 다음의 조건에서 행해질 경우를 성희롱이라고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212.5항이 정의하고 있다:

- 해당 행위에 대한 복종은 개인의 취업, 학업 상황이나 진전도의 조건이나 상태에 영향을 미치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
- 행위에 대한 복종이나 거절, 한 개인의 행동이 해당 개인의 취업 또는 학업 결정 근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사용되었다.
- 해당 행위가 개인의 근무 내용, 또는 학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목적을 지니고 있거나 위협적이고, 적대적 또는 공격적 작업 또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 해당 개인의 행위에 대한 복종이나 거절, 또는 한 개인의 행동이 해당 개인의 혜택 및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또는 교육 기관에서 또는 교육기관을 통한 포상,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근거로 사용되었다.

성희롱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

- 언어 행위로서 암시적인 말, 명시적인 말, 저속한 말(야유, 휘파람이 포함됨), 성적으로 모욕적인 말, 욕, 또는 원하지 않은 성적 구애, 초대 또는 논평, 성행위 또는 성적 능력에 대한 소문 유포 또는 성능력 등급에 대한 소문 유포가 해당된다.
- 시각적 행위로서 성적 내용이 담긴 암시적인 물체, 그림, 포스터, 서면 내용, 만화, 성적 내용이 담긴 그림, 낙서 또는 외설적인 몸짓이 해당된다.
- 물리적 행위로서 원하지 않는 접촉, 꼬집기, 입맞춤, 가벼운 접촉이나 끌어안기; 일상적인 몸 움직임 차단; 뒤를 따라 다니는 행위; 폭행 그리고/또는 성별을 근거로 한 개인의 작업을 방해하거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 직업 또는 학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적 요구에 복종하도록 협박, 요구 또는 압력을 가하고, 성적 부탁의 대가로 혜택을 제안하는 행위
- 성희롱 수사에 신고하거나 성희롱 관련 소송 절차에 개입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 신고, 협박하기 위한 보복 행위.

추가 정보나 학생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학생 관련), 교육적 형평성 준수 부서에 (213) 241-7682로 연락하십시오. 교육구 직원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균등 기회 부서 (213) 241-7685로 연락하십시오.

아동 학대

반드시 신고해야함

아동 학대가 발생했거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는 합당한 의심이 가진 교육구 직원은 법규에 의거하여 아동 학대 신고해야 한다. 이런 신고서는 해당 아동 보호 서비스 기관 즉 관할 경찰서, 쉼리프 국, 아동 및 패밀리 서비스국에 접수된다. *(교육구 경찰서는 법규에 의거하여, “아동 보호 서비스 기관”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아동 학대 신고서를 수령받지 않을 수도 있다.)*

LAUSD 학생/학교 품행 규정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우호적인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지도 원칙

1. 존중
2. 책임감
3. 다양성 이해
4. 정직
5. 안전
6. 평생 학습자

아래 항목 중 어떠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명된 학생은 정식 조사의 대상이 되며, 해당되는 경우 정학, 퇴학 그리고/또는 법집행기관 의뢰를 포함할 수 있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을 허용되지 않는다:

1. 왕따/위협
2. 무기 소지
3. 싸움/협박/폭력
4. 약물 소지/매매
5. 낙서/건물 손괴
6. 갯 활동
7. 컨닝 및 표절
8. 도용 및 허위
9. 성희롱 및 성폭행
10. 공갈 및 강탈
11. 편견 및 혐오 범죄
12. 강도 및 절도
13. 불꽃놀이 및 폭죽

적절한 지도를 받으면서, 학생은 다음을 행해야 한다:

1. 학교 및 학급 규율을 배우고 준수한다.
2. 갈등을 신체적, 언어적 폭력 없이 성숙한 태도로 해결한다.
3. 낙서, 무기 및 약물이 없는 안전하고 정결한 교정을 유지한다.
4. 타인에게 모범이 되고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를 조성한다.
5. 왕따, 괴롭힘, 혐오 사건을 신고한다.
6. 경기장이나 운동장에서는 양호한 스포츠맨십을 보인다
7. 교과서/학습자료를 가지고 배울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정시에 학교에 출석한다.
8. 안전한 대인관계를 유지한다.

학생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한다. 학생의 아이디어, 생각 및 의견은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학교의 기상은 다음을 의미한다 ……

- 타인 존중
- 평화적인 해결책
- 타인의 말 경청
- 약물 사용하지 않음
- 청결하고 아름다운 교정 유지
- 건전한 친구관계
- 자신 직접한 공부
- 정직함과 인격 수양
- 공감과 배려심
- 타인의 권리 옹호

- 다양성 이해
- 타인의 재산을 존중
- 안전한 활동에 참여

학교 통학버스 관련 행동규범

학교버스를 타는 학생은 학교에서와 동일한 규율과 행동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비행, 학교버스 운행 방해, 학교버스 운전수에게 무례한 행동, 학교버스 안전 운행을 위험하게 하는 경우, 학교버스를 잠정적 또는 영구적으로 탈 수 없는 것을 포함한 여러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된다.

등교복/교복

학교는 학생의 보건 및 안전에 적절히 조절된 복장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학교 복장 규정 및 교복 방침은 미합중국 헌법 제 1 수정안 및 캘리포니아 헌법 1조 제 2하에 명시된 권리와 일치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만 한다.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쟁단 복장”은 학교 환경의 보건 및 안전에 위험한 것으로 결정했고, 따라서 그런 복장을 착용하는 것을 규제시킬 수 있다.

A. 복장 규정

학생은 청결, 보건, 단정, 안전함을 유지하고, 학교 활동을 하기 위해 적합한 복장 및 외모를 지니도록 타당한 주의를 보여야만 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학생의 복장 및 머리 스타일은 단정하게 하며 다음을 하지 않아야 한다:

- 학교 활동에 지장 또는 혼란을 실제로 초래했거나 학생이 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실제로 방해하는 것
- 본인이나 타인의 안전에 위험한 행동
- 보건과 관련하여 위험을 초래하는 것

B. 교복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35183조에 의해 운영 위원회는 학교에게 교복 착용을 허용할 수 있는 교복 방침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한다. 로스앤젤레스 교육구는 그런 교복 방침을 채택하지 않았다. 각 학교의 자율 위원회의 합의 하에 자체 학생 교복 방침을 채택하는 학교들도 있다. 따라서, 각 학교가 시행하는 교복 방침은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하며, 빈곤층 학생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부조항을 작성해야 한다. 교복 착용을 하지 않은 선택이 있다는 것을 부모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부모가 교복 착용을 선택하지 않아서 교복을 입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징계 처분이나 차별 조치가 내려질 수 없으며 타학생에게 주어진 권리 및 특권을 거절할 수 없다.

위의 지침 사항과 일치하는 머리 스타일, 구레 나루, 수염을 길이 또는 스타일에 상관없이 기를 수 있으며, 학생과 부모가 결정한 의복을 패션, 스타일 또는 디자인에 관계없이 착용할 수 있다.

정치적 행위, 군중, 집회, 데모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학생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교정 내에서 정치적 또는 언론의 자유 행위에 참여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견해와 의견을 반영한 서면 자료를 배포할 있다. 비-수업 시간동안 교정에서 집회를 결성하여 자신의 견해와 의견을 토의하고, 비-수업 시간동안 교정에서 평화스런 데모에 참여할 수 있다. 학생의 언어, 표현 또는 행동이 상스럽거나, 음용하거나, 명예 훼손, 서면의 명예 훼손, 학생을 자극하여 건물을 파손하거나 다른 사

람에 부상을 입히거나 학교를 막대한 방해를 일으키지 않는 한, 학생은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법은 학교 행정관이 교정 내에서 또는 학교 시간 동안 학생들의 언론 자유 권리를 행사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행동 반경을 설정할 것을 허용한다. 학교 행정관은 모든 학생과 교육구 고용인을 위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정을 유지하기 위해 시간, 장소, 언어 및 행동의 방식에 대해 규제를 설정할 수 있다. 학교 행정관 또는 데모, 집회, 실-인 등의 관련 교육구 방침에 대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학생들은 징계 처분 받을 수 있다.

데모 동안 교정 또는 교실을 자발적으로 떠난 학생은 교정이나 교실로 돌아오라는 지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지시를 준수하지 않고 거부하는 학생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학생의 데모 또는 워크아웃이 일반 대중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 관할 법 집행기관은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학생의 언론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고 존중하지만, 교육구 직원은 이런 학생의 데모, 자료 배포, 집회, 실인 또는 워크아웃을 장려, 후원 또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를 원한다면 자녀의 학교 행정관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학생 수색

미합중국 헌법 제 4 수정안은 불법 수색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 하지만, 법은 제한된 특정 상황 하에 학교 직원이 학생을 수색하는 것을 허용한다.

A. 합당한 의심에 근거한 수색

해당 학생이 범법 행위를 저질렀거나 저질르려고 하거나, 제정법 또는 학교 규율을 위반했다는 합당한 의심을 행정관이 가지는 행위에 학생이 개입한 경우, 해당 행정관은 학생을 수색할 수 있다. 해당 행정관은 다음을 해야 한다:

- 의심의 이유 그리고 사실 그리고/또는 특정 사건의 간접 정황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해당 학생과 특정 사건, 범죄 또는 규율 또는 제정법 위반 행위를 합당하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사적인 지식 그리고/또는 기타 증인들로부터 최근의 신빙성있는 정보에 근거한다.
- 합당한 의심에 근거한 수색이 학생의 연령, 성별, 범법 행위에 비추어볼 때 과도한 침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합당한 의심에 근거한 학생 수색을 집행할 때, 학교 직원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 명백하고 구체적인 의심 사유가 있고, 학생과 특정 비행 사건과 연결시키는 사실이 있을 경우에만 수색을 행한다.
- 자켓, 지갑, 주머니, 백팩, 가방, 학생 소지물이 있는 상자는 합당하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색할 수 있다.
- 어떤 상황에서라도 신체, 나체 수색은 행해질 수 없다.
- 동일한 성별의 학교 직원만이 수색을 행할 수 있다.
- 합당한 의심에 근거한 수색은 기타 학생이나 교직원이 볼 수 없는 사적 공간에서만 행해질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성별의 학교 행정관 또는 지정된 증인은 예외이다).

B. 무작위 금속 탐지기 수색

캘리포니아 법정 및 캘리포니아 검찰청은 무작위 무기 탐지기 사용을 승인했다. 금속 탐지기의 무작위 사용은 다음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 수색 대상의 학생 선정 방식이 진실로 무작위이다.
- 무작위 금속 탐지기 수색에 선정된 학생은 인종, 성별, 성명, 그룹 결연관계, 또는 과거의 비행 행위와 같이 개별적으로 식별될만한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선정되었다
- 수색은 침범 범위를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 학교 직원은 무작위 금속 탐지기 수색 절차에 대한 자세한 통지문을 사전에 학생과 부모에게 제공한다

금속 탐지기 수색의 결과, 만약 특정 학생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합당한 의심(reasonable suspicion)**이 발생한다면 학교 직원은 사적 공간에서 학생을 수색할 수 있으며, 이를 합당한 의심 수색에 대한 위의 지침사항에 따라 집행한다.

학생 소지품

개인 소지품은(핸드폰, 아이패드, 카메라, 전자게임, 라디오, CD 플레이어, 컴퓨터 등) 손실, 절도,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가져오지 않도록 한다. 더불어 이런 것들은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음으로 교직원들이 이를 몰수할 수 있다. 교육구는 이런 물품의 손실이나 절도에 대한 책임이 없다(락커에 둔 경우도 포함).

휴대폰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LAUSD) 방침에 의하면, 학생들은 휴대폰, 전자 신호 전달 기구를 정규 학교 시간동안 사용할 수 없다. 학생들은 핸드폰, 페이지, 전자 신호 전달 기구를 교정에서 소지할 수 있지만 이런 기구는 “오프”로 해두고 락커, 백팩, 지갑, 주머니 등 정규 학교 시간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휴대폰, 페이지, 전자 신호 전달 기구는 방과전, 방과후 시간 또는 활동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는LAUSDnet를 통하여 인터넷 접속 및 이메일 사용할 수 있다. 교육구 웹사이트는 www.lausd.net이다. LAUSD 학생이나 직원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우 LAUSD 사용 규칙(AUP)에 적용되며 이런 내용은 교육구 웹사이트에 찾아볼 수 있다. 된다. LAUSDnet를 통한 인터넷 사용 및 LAUSDnet 사용권은 특전이지 권리는 아니다. 학생증 번호를 가지고 있는 학생과 현재 고용인 번호를 소지한 LAUSD 직원들 그리고 교육구에 의해 채용된 컨트랙터들은 LAUSDnet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취지는 정규 수업 또는 업무 활동, 교육적 리서치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함이다.

학생은 자신이 등록된 학교에서 이를 후원하는 교사나 행정관을 통하여 자신의 LAUSDnet 이메일 주소를 취득할 수 있다. 교육구 시설물에서 인터넷을 접속하거나, 교육구 시설물과 상당한 거리로 떨어져 있지만 접속된 인터넷을 사용하는 학생은 학생 서명과 학부모 허락서를 학교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연방 아동 인터넷 보호법(Federal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CIPA)을 준수한다. 특히 CIPA는 교육구가 다음의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A) 음용한 내용, (B) 아동 포르노, 또는 (C)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내용. 인터넷 테크놀로지를

백퍼센트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학교나 집에서 자녀를 충분히 감독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이 없다. 자녀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 관련 정보는 <http://www.isafe.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음악, 사진 그리고/또는 비디오를 다운로드하는 학생은 모든 해당 저작권법을 준수해야만 한다. 이에 더불어, 음악, 사진 그리고/또는 비디오는 개인용이 아니라 교육구용으로만 다운로드해야 한다. 개인적 다운로드를 특히 저작권으로 보호된 LAUSD의 AUP에 저촉되는 자료인 경우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승인되지 않거나 그리고/또는 불법 다운로드 행위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

LAUSDnet 사용자들은 사생활 비밀 보장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인터넷은 공공 네트워크이며 이 속에 있는 이메일 또는 기타 통신 내용은 사적 내용이 아니다. LAUSDnet 시스템 운영자들은 모든 사용자의 주소 및 자료, 이메일, 개인용 웹페이지, 그리고 시스템 서버(server)에 저장된 기타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시, 주법 및 연방법을 준수할 뿐 아니라 교육구의 목표, 목적, 방침 및 교육적 사명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사용자가 먼저 접하지 않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용자는 인종, 종교, 신념, 피부색, 국적, 조상, 신체 장애, 성별 또는 기타 이유로 타인을 협박, 조롱, 명예 훼손, 비하할 목적으로 LAUSDnet를 접속할 수 없다. 이메일이나 기타 게시 자료에 포함된 개인의 믿음에 대한 내용은 해당 내용을 작성한 사람의 개인적인 견해이지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의 견해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LAUSD의 AUP을 위반하는 경우, 인터넷/이메일 특전을 상실할 수 있고, 더불어 징계/법적 조치도 취해질 수 있다.



학생 징계: 정학, 퇴학 및 기회 전학

학생 징계: 징계 규범

모든 교육구의 운영위는 주 교육위에서 제정한 법이나 규율에 합치되지 않는 규정을 정하지 않으며, 이는 해당 관할권 하의 모든 학교의 운영 및 징계에 적용된다.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모든 학년에 적용되며 이런 학생을 교육하는 교육구의 운영위는 제 48980과 제 48915에 명시된 방식으로 때때로, 해당 교육구에 등록된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학생 징계처분 관련 교육구 규정을 통지하도록 한다.

교육법 제 35291.5조가 정하는 바에 의하면, 각 학교는 징계 방침 및 절차를 설정할 권한이 있다. 학교는 재학생들에게는 매 학년 초에, 전학한 학생에게는 등록 시에 이런 정보를 제공한다.

A. 약물, 담배 및 알콜 금지

알콜, 담배 및 니코틴 제품(담배, 씹는 담배, 또는 기타 관련 제품) 허용하지 않으며, 학교 관할권하에서 해당 제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했다는 것이 판정된 학생에게 구체적인 처벌이 취해지며, 구금부터 정학, 방지 프로그램 참여로부터 퇴학 권고까지 받을 수 있다. 학교에서의 약물 소지는 범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할 법 집행관에게 신고될 것이다.

약물의 불법 판매에 개입된 학생은 퇴학 권고를 받을 것이며 형법 기소의 대상이 될 것이다.

B. 전자 기구

학생은 교정에서 셀룰라 전화기, 호출기, 전자 신호 기구를 정상 학교 시간에 사용하지 못하며, 점심 시간 및 영양 휴식 시간은 이에 제외된다. 이런 기구를 학교로 가지고 온 경우, “오프”로 한 다음 라커, 백팩, 지갑, 기타 장소 즉 학교 시간 동안 보이지 않은 곳에 보관시키고, 만약 이런 기구를 학교 직원이 본 경우, 학부모나 보호인이 다시 찾아갈 때까지 몰수할 것이다. 해당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을 사진 촬영, 비디오 촬영 또는 기타 녹음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한다. 시험시간 동안, 핸드폰, 페이지 또는 전자 신호 전달 기구가 울리거나 눈에 띄는 경우, 이런 물건은 몰수당하고 해당 학생은 시험치는 교실 밖으로 나가야 한다. 하지만 학생의 건강문제로 인해 학교 행정관이 이런 기구를 허용한 경우는 이런 방침의 예외이다.

C. 화기, 무기 및 기타 위험한 물건 금지 위험한 물건

교육구는 위험성 있는 물건은 종류와 상관없이 “엄격한 방침”을 유지한다. 따라서, 학교 행정관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학생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이다.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으며, 칼 (스위스 군대용 칼, X-acto 조각칼, 유틸리티용 칼), 면도칼, 무술 공격용 도구, 클럽, 손가락에 끼는 낫쇠, 폭발물 그리고 모든 종류의 화기 또는 BB 총/pellet 총(모조총 포함됨) 이 해당된다. 고의가 아니고 부주의하여 이런 금지 물건을 교정에 가지고 온 학생은 교사 또는 행정관에게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경우 징계 처분을 면하게 된다. 연방 총기 금지 학교법(Federal Gun Free Schools Act) 및 캘리포니아 법에 의거하면, 화기를 소지하였다고 판정된 학생은 퇴학 처분을 권고받게 된다. 학생의 신체, 학생의 락커, 현재 입고 있지 않은 학생의 자켓 주머니에 소지하거나 지갑, 백팩, 차량에 둔 경우가 소지에 해당하지만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총 소지로 퇴학 처분받은 학생은 일년 동안 퇴학 처분당하고 법적 기소를 당할 수 있다.

정학 및 퇴학

교육법 제 48925조가 정의하는 바에 의하면, 정학은 “조정할 목적으로 학생을 진행중인 프로그램으로부터 제거”하는 것이다. 학생은 연속적으로 최고 5일의 정학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법 제 48925조에 정의에 의하면, 퇴학은 (1) 즉각적인 감독 및 규제로부터 또는 (2) 학교 직원의 일반 감독으로부터 학생을 제거.....“하는 것이다. LAUSD 소속, 학생 징계 절차부는 퇴학 권고를 받은 학생에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청문회와 모든 적법 절차 권리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집행 유예없는 퇴학처분(“즉각 퇴학”)을 받은 경우, 퇴학 기간동안 LAUSD 학교나 프로그램 출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는 퇴학 집행 유예를 받은 학생은, 교육법 제 48917조에 의거하여, LAUSD의 교육적 옵션 학교

프로그램에 배정될 수 있다. 퇴학 기간은 위반 내용에 따라, 위반 행위가 발생한 학기의 잔여 기간; 해당 잔여 학기와 그 다음 학기; 일년 학교 기간이 될 수 있다. 특별 상황에서는 퇴학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A. 학생은 다음의 시간 대에 발생한 사건으로부터 정학 또는 퇴학조치의 대상이 된다.

- 학교 대지에 있는 동안.
- 등하교 시.
- 교정 안팎에 관계없이, 점심 시간.
- 학교가 후원하는 행사 동안, 또는 행사에 가는 동안, 행사로부터 돌아오는 동안.

캘리포니아 법규에 의거하여, 학급 교사는 교육법 제 48900조(아래 정학/퇴학 사유, B 항을 참고하시오)에 명시된 문제 행동을 저질른 학생을 해당 학급에서 수업 정지 처분(classroom suspension)을 할 수 있다. 학생에게 수업 정지 처분을 내린 경우, 해당 교사는 이를 즉시 교장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내리도록 한다. 그런 다음, 교장은 학생을 학교 정학처분을 내릴 것인지 또는 학생을 해당 수업 정지 처분 시간동안 교정에 남아있게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교장 또는 교장 대리인만이 학교 정학처분을 내릴 수 있다. 수업 정지처분 기간은 학생이 처음 수업 정지를 받은 당일 수업 나머지 시간(또는 해당 수업 시간) 그리고 다음 날(또는 다음 날 해당 수업시간)보다 더 길 수 없다. 수업 정지처분을 받은 학교는 적절한 감독 하에 교정에 남아있어야 한다. 이런 수업 정지처분이 내려진 경우, 교사는 되도록 신속히, 학교 행정관, 학교 카운슬러 또는 학교 심리학자와 부모와 동석한 컨퍼런스를 실시한다. 학생이 상스러운 행위를 저질르거나, 상습적인 욕, 험한 언어 사용을 한 경우, 또는 교사나 행정관의 타당한 권위로 명시된 학교 활동을 방해한 경우, 해당 교사는 부모/보호자에게 자녀의 수업 시간의 일부를 참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B. 정학/퇴학 사유

- 타인에게 상해를 초래했거나, 시도하였거나, 상해를 입히겠다고 위협하였다
- 타인의 신체에 완력 또는 폭력을 의도적으로 가했거나, 정당 방어는 예외이다.
- 화기, 칼, 폭발물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 판매, 또는 제공한 경우, 다만 자객증 소지 직원이 해당 물건을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교장 또는 담당인이 이를 동의한다는 허가서를 취득하여, 이런 물건을 소지한 경우는 예외이다.
- 보건 및 안전법 제 10장 2항(제 11053조부터 시작)에 열거된 규제 약물, 알콜성 음료 또는 유독성 물질을 불법적으로 소지, 사용, 제공하거나 영향하에 있는 경우.
- 보건 및 안전법 제 10장 2항(제 11053조부터 시작하여)에 열거된 규제 물질, 알콜성 음료, 또는 유독성 물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의, 주선, 또는 협상하는 경우 그리고, 리커, 물질 또는 재료를 타인에게 판매, 보급, 또는 제공한 경우 그리고, 리커, 물질 또는 재료를 규제 물질, 알콜성 음료, 또는 유독성 물질로 제시한 경우.
- 강도죄, 공갈죄를 저질렀거나 시도한 경우.

- 학교 재산 또는 개인 재산에 피해를 초래했거나 시도한 경우.
- 학교재산이나 개인재산을 훔쳤거나 시도한 경우.
- 담배, 또는 담배나 니코틴이 함유된 물품을 소지하였거나 판매한 경우이며 다음의 물질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으며, 담배, 시가, 축소형 시가, 클로브 담배, 무연 담배, 코담배, 씹는 담배, 베틀 담배가 해당된다. 그러나 학생 본인에게 처방된 물품을 학생이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본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
- 음흉한 행위를 저질렀거나 상스러운 언동이나 욕설을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보건 및 안전법 제 11014.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약물 장치를 불법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제의, 주선 또는 협상하는 경우.
- 학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감독관, 교사, 행정관, 학교 직원, 또는 해당 임무를 수행하는 기타 학교 직원의 합당한 권위에 대하여 반항하는 경우.
- 학교 재산이나 개인 재산이 장물인줄 알면서 이를 수취한 경우.
- 모조 총기를 소지한 경우. 본 조항에서 “모조 총기”라고 사용된 것은 총기 모조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총기의 외관이 실제의 총기와 상당히 비슷하여, 일반인이 모조품을 총기라고 믿게 하는 경우이다.
- 형법 제 261, 266c, 288, 288a, 289에 명시된 성폭행이나 형법 제 243.4에 명시된 성 구타죄를 저질렀거나 시도한 경우.
- 고소 당사자로서 증인, 증인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생이 증언하는 것을 저지할 목적이나 증언하는 학생에게 보복 행위를 할 목적이거나, 두 개 목적을 위해서 해당 학생을 괴롭히거나, 협박이나 위협하는 경우.
- 처방약 소마를 불법적으로 제의, 판매 주선, 판매 협상 또는 판매한 경우.
- 제 32050항에 명시된 정신 몽롱 상태를 개입했거나 개입을 시도한 경우.
- 타인에게 신체적인 부상을 입히거나 시도하는 것을 방조한 경우(정학에만 해당됨)
- 교육법 제 212.5조에 정의된바와 같은 성희롱을 저질렀을 경우. 본 항목의 견지에서, 제 212.5조에 설명된 행위는,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을 가진 일반인이, 해당 행위가 해당인의 학업에 악영향을 줄 정도로, 또는 위협적, 적대적 또는 공격적 교육 환경을 조성할 정도로 심하거나 포괄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어야 한다. 유치원 및 1학년년부터 3학년에 등록된 모든 학생에게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제 233조 세부조항 (e) 명시된 바와 같은 증오성 폭력죄를 저질렀거나, 시도했거나, 저지를 것이라고 위협하거나, 이런 행위에 참여한 경우. 본 조항은 4학년부터 12학년까지 종합하여 모든 학생에게 적용된다.
- 한 명의 학생 또는 여러 학생을 대상으로 의도적인 괴롭힘, 협박, 위협을 한 경우 즉,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그 행위에서 예상되는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결과가 수업을 상당히 방해하거나, 상당한 혼란 조성하고, 해당 학생 또는 여러 학생의 권리를 침해할 정도로 그 행위가 족히 심하거나 포괄적인 경우. 본

조항은 4학년부터 12학년까지 종합하여 모든 학생에게 적용된다.

- 교직원이나 학교재산에 대하여 테러리스트 협박하는 행위, 또는 두 가지의 행위 .
 - 폭탄 협박은 연방범죄이며, 학부모/보호자는 금전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을 수 있다.

C. 의무적 퇴학

캘리포니아 법에 의하면, 학교 교장은 다음의 비행 사건이 교정에서나 교정 이외의 곳에서 열린 학교-후원 행사에서 발생하였다고 결정하는 경우 반드시 퇴학 권고를 내려야 한다:

- 총기 소지
- 타인에게 칼을 휘두르는 행위
- 규제 약물의 불법 판매
- 성 폭행 또는 성 구타를 저지르거나 이를 시도한 경우
- 폭발 도구 소지

1994년 연방 무기 없는 학교 법안에도(The Federal Gun-Free Act of 1994) 학교에 무기를 가지고 온 학생에게는 퇴학을 의무화시키고 있다.

D. 장애 학생의 행동 중재

학습에 방해가 되는 문제 행동 장애 학생은 개별 교육 계획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IEP) 절차를 통해 행동 지원 플랜을(BSP) 받아야 한다.

교육법(EC56520 이하 조항)에 명시된 “심각한” 문제 행동을 지닌 장애 학생인 경우, 기능적 분석 평가(Functional Analysis Assessment-FAA), 행동 중재 플랜 (Behavior Intervention Plan-BIP)이 요구될 수 있다.

E. 장애 학생의 정학, 기회 전학 및 퇴학

장애 학생들에게는, 하지만 법에 의거하여 추가 절차와 심사숙고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정학:
 - 특수교육: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이 정학 처분을 받을 경우, 교직원은 행동 지원 플랜(BSP)을 작성하기 위해 IEP 회의가 필요한지, 또는 문제 행동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행동 지원 플랜을(BSP) 재검토하고 수정해야 하는지를 정해야 한다. 정학 처분의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 행동이 계속되는 경우, 추가 행동 지원의 필요 여부 그리고 현재 배정 및 서비스가 적절한 지를 검토하기 위해 IEP 회의가 요구될 수 있다. IEP 팀이 확정적인 결정을 하지 않는 한, 해당 학생은 한 학년도 동안 10일 이상의 정학처분을 받을 수 없다.
 - 섹션 504조: 섹션 504조에 해당되는 학생은 섹션 504조 팀이 확정적인 결정을 하지 않는 한, 한 학년도 동안의 총 정학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더 이상의 정학을 받을 수 없다.
- 기회 전학:
 - 특수교육: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이 다른 학교 또는 교육 장소로 전학하는 경우 IEP 회의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징계조치로 인해 전학하는 경우, IEP 팀은 전학을 고려하게 된 행동(들)을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지원(행동 지원 플랜을(BSP) 포함) 그리고/또는 서비스를 고려해야만 한다. IEP 팀이 확정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특수 교육 서비스 해당 학생은 부모의 동의가 없을 경우 배정 변경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섹션 504조: 섹션 504조에 해당되는 학생의 징계적 기회 전학은 배정 변경으로 간주되며, 섹션 504조 팀이 확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만 발부될 수 있다.

- 퇴학:

특수교육: 특수 교육 서비스 해당 학생에게 퇴학처분을 고려하는 경우, 퇴학 권고 및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결정 사유를 심의하기 위한 예비-퇴학(pre-expulsion) IEP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장애 학생이 퇴학 당한 경우, 퇴학 기간동안 IEP에 명시된 특수 서비스를 계속받을 권리가 있다. 퇴학 처분받은 학생은 퇴학 기간동안 퇴학 후 서비스(post-expulsion service)를 받을 권리가 있다(퇴학으로부터의 재활 및 복구를 참고하시오). 해당 학생에게 퇴학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학생의 IEP에서 정한바와 같이 가장 적절한 장소에 배정된다.

섹션 504조: 섹션 504조에 해당되는 학생의 퇴학은 배정 변경으로 간주되며, 섹션 504조 팀이 확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만 발부될 수 있다.

- 추가 정보는 특수 교육 서비스에 대한 학부모 안내서(절차상 권리 및 안전조치 포함)를 참고하시오.

퇴학으로부터의 재활 및 복원

하원 법안 922 규정에 의하면, 교육구는 퇴학 처분당한 학생에게 학교를 배정하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이에 더불어, 교육구는 퇴학 처분당한 학생에게 재활 플랜과 전략서를 작성하여 이런 서비스를 교육구 커뮤니티 데이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위임해야만 한다. AB 922 법규에 의하여, 교육구 학생 퇴학 중재부서 (Student Expulsion Intervention Unit) 는 학생 재활을 조정하고 신속히 지원하며, 교육위에 복구 권고를 건의한다. 해당 서비스에는 복원의 기간 및 조건을 명시한 개별 재활 계약서 작성; 학생 및 부모에게 자원 제공, 복원 절차 동안 학생의 진전도 감독이 포함된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48916조에 의하면, 재입학 과정이 완료되면 교육위는 해당 학생을 재입학시키지만, 만약 학생이 재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았거나 학교 안전이나 기타 학생 또는 교육구 직원들에게 위협의 대상이 된다고 판정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기회 전학

재학 중인 초등학교나 중학교 공립학교에서 폭력 범죄의 피해자였거나, 해당 공립학교가 캘리포니아 주 교육구로부터 “지속적으로 위험한 학교 (persistently dangerous school)”로 식별된 경우, 해당 학생은 자발적으로 전학할 수 있다.

징계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징계 처분 및 기회 전학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 학교 교장에게 직접 또는 소교육구 운영 코오디네이터에게 의뢰할 수 있다. 퇴학 권고를 받은 학생은 퇴학 청문회에 대한 권리가 있다. 이런 청문회 후 퇴학 권고가 교육위로 회부되는 경우, 학생이나 학생의 부모/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교육위의 최종 결정 전에 교육위에서

발언할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육부에 퇴학 항소를 접수시킬 수 있다.



안전한 학교 환경

LAUSD는 최근에 무폭력 생활 운동을(Live Violence Free -LVF) 시작했다. LVF 운동의 목적은 학생을 중심으로 모든 주요 구성원들이 교육구와 이 도시에서의 폭력적 갈등 해소는 더 이상 받아들이 수 없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안전한 학교란 구성원들이 폭력을 선택하는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치며,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어떤식으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략을 알아보고 이런 도구를 수용하고 실행하는 학교이다.

알콜, 담배, 약물 및 폭력-예방 및 금지

약물, 알콜, 담배관련 법규 위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책 및 의무 절차의 제목으로 발부된 방침 공문 문서 번호 3277에 명시된 바와 같이: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학교 교정이나 학교 후원 행사에 학생이 약물, 술, 담배를 사용, 소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학교 행정관은 반드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하며 교정 및 학교 행사에 약물, 술, 담배의 사용 또는 소지를 방지해야만 한다.” 학교 경찰 및 관할 기관과의 공조 하에, 학교 행정관은 약물, 술, 담배, 폭력 없는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예방 교육, 직접 중재, 퇴학 또는 체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케이스별로 처리된다. LAUSD는 여러 약물 및 알콜 교육, 중재 및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보건 교육 프로그램부(The Health Education Programs-HEP)는 임팩트와 담배 사용 예방 프로그램(TUPE)을 통해 약물 및 담배 관련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담배-금지 정보는 교육구 담배 사용 예방 교육 프로그램(the District Tobacco Use Prevention Education-TUPE)을 통해 미성년 임신부와 미성년 부모에게 제공될 수 있다. 부모와 학생들에게 도움을 구할 것을 권한다. 추가 정보를 원한다면 학교 또는 소교육구 학생 보건 및 인문 서비스 전문인에게 연락하시오.

총기로부터 안전한 학교

연방 총기 불용납 안전 학교법(Federal Gun Safe Schools Act) 및 캘리포니아 법규에 의거하면, 학교 교정에서 총기 소지를 금한다. 이런 법규들에 의하여, 총기를 소지한 학생이 발견되면, 해당 학생은 체포의 대상이되며, 즉시 퇴학 조치를 권고받을 것이다. 퇴학 기간은 일년이다. 해당 학생이 무기를 소지했다고 판명되는 경우, 운영위는 그 학생을 퇴학시킨다. “소지 (possession)”에는 라커, 지갑, 백팩, 자동차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학교 캠퍼스 방문인

캠퍼스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교장/담당인으로부터 방문에 대한 동의와 허락을 받아야 한다. 허락은 가급적 요청과 동시에 또는 요청 후 적정한 시간내에 주어야 한다. 해당 학교의 재학생이 아닌 아동은 교장의 사전 허락을 받기 전에는 캠퍼스에 들어올 수 없다. 방문인은 수업이나 학교활동을 방해나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질서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교육구 방침 즉 공문 번호 3630호에 의거하여, 교육구의 모든 부지는 공연 장소이며 모든 담배 관련 제품이 금지된다. 이에 교육구-소유 또는 임대 건물 그리고 교육구 차량에서, 직원, 학생

그리고 학교나 교육구, 학교-후원 행사에 참여는 모든 사람이 항상 이를 지켜야 한다. 다음은 방문인에게 기대되는 내용이다:

- 교실 방문 요청시 이미 규정된 학교방침을 준수하도록 한다.
- 학교 도착하는 동시에 방문인 허가증을 작성한다.
- 교실을 가급적 조용히 출입한다.
- 방문시 학생, 교사 그리고/또는 보조교사들과 대화하지 않는다.
- 학교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 교실 방문 시간과 빈도를 적절하게 유지한다.
- 방문 후, 교사 그리고/또는 교장을 만나야 하는 경우 학교 규정 절차를 준수하도록 한다.
- 캠퍼스를 떠날 때 방문인 허가증을 반납하도록 한다.

학교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학교 규칙 그리고/또는 절차 준수를 불이행하는 사람은 학교로부터 나가게 할 것이며 추가 방문이 거절될 수 있다

조정된 안전 및 건전한 학교 플랜

캘리포니아 공립학교는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35294조를 준수해야만 하며, 이는 “안전 학교 플랜(Safe School Plans)” 준비에 관한 것이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아동 영양 및 여성, 유아 및 아동 재선임 법규(the Child Nutrition and Women, Infant, and Children Reauthorization Act) 2004년도 준수해야만 하며, 이는 관할 복지 방침을 작성하고 감독하기 위함이다. 이 플랜에는 폭력 방지, 긴급 대피 준비, 교통 안전 및 위기 중재 그리고 복지 방침을 다룬 조정된 학교 보기가 포함된다. 본 교육구는 참고 지침서 번호 REF-1242.2를 발행했는데, 이는 조정된 안전 및 건전한 학교 플랜, 제 1판 - 예방 프로그램 및 제 2판 - 긴급시 비상 플랜“은 “조정된 안전 및 건전한 학교 플랜의 준비에 대한 세부 지침사항이다.

학부모는 조정된 안전 및 건전한 학교 플랜을 매년 검토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갱신할 책임이 있는 교장 또는 학교 안전 계획 위원회 멤버로부터 조정된 안전 및 건전한 학교 플랜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다. 안전 학교 플랜에 대한 사본은 메인 오피스에서 받을 수 있다. 해당 학교 행정관은 본 플랜서를 인쇄하여 충분한 사본을 준비하여, 모든 교직원과 일반인이 이를 쉽게 검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사본은 중요 직원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메인오피스, 교직원 식당이나 휴게실, 비상용 상자에 준비되어야 한다.

비상시 대책

모든 LAUSD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이 비상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 모든 학교는 교직원의 비상시 대책 관련 시행세칙이 자세히 기록된 조정된 안전 및 건전한 학교 플랜 안전 학교 플랜(Coordinated Safe and Healthy School Plan)을 갖추고 있다. 모든 학교는 교육구가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거나 초과하는 정기 예행 연습을 실시하며, 장애인에 대한 편의조치를 제공한다.

정기 예행 연습은 학교 활동의 일부이며 모든 학교는 다음 종류의 예행 연습을 실시한다:

화재 예행 연습 - 모든 초등학교는 매달 1회 예행 연습을 실시하고 중고교는 매 학기에 1회 실시한다.

지진 또는 비상시 대처 예행 연습 - 매년 2회에 걸쳐, 정식 예행 연습(full-scale)을 실시한다. 4월의 대규모 예행 연습은 교

육구 전체가 참여하는 것으로서, 학교 재난 대비책의 모든 부분을 예행 연습한다.

안전한 교정 드릴(Protected Campus Drill) - 학교는 정기 예행 연습을 통해 교정 내 또는 인근에 발생한 위협 상황에 대비한다.

덕, 커버, 홀드 드릴(Duck, Cover and Hold Drill) - 매달, 이런 예행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진 발생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상기시킨다.

테이크 커버 드릴(Take Cover Drill) - 학생이 학교 주변의 총성, 폭발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연습한다.

정기 예행 연습에 추가되는 것으로서, 각 학교는 비상시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긴급 비품을 갖추어 놓는다. 다음 비품이 포함된다: 물, 음식, 응급치료 용품, 수색 및 구조 기구, 위생/위로 비품. 교직원은 이런 비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환경적 조건 및 안전 검사관에 조사된다.

비상시 부모가 보다 잘 대처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것들

부모들은 다음의 내용을 준비함으로써 비상시 보다 잘 대처할 수 있다:

1. 자녀의 학교를 방문하여 비상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질문한다. 자녀의 이머전시 카드가 최신의 내용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모든 예행 연습을 심각히 여기고 참여하도록 부모는 자녀에게 지시한다. 자녀와 함께 가정 및 학교 비상시 절차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3. 가족 재난 대처 플랜을 준비하고 전 가족이 함께 이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4. 집, 차(들), 직장용 재난 대처 비품을 준비한다.
5. 비상시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에게 위험할 수 있는 물건들을 제거한다.
6. 미 적십자사에 연락하여 재난 대비 정보를 받도록 한다. 웹사이트 www.redcross.org를 검색하거나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213) 739-5200로 전화한다.
7. 지역 소방국에서 커뮤니티 비상 대처 트레이닝 (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raining-CERT)을 받도록 한다.

비상시 대처

비상사태 발생시, 부모들은 학교가 가장 안전한 장소들 중 하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법규에 의거하여, 캘리포니아 공립학교는 필드 법규(Field Act)라고 불리는 보다 엄격한 건축기준에 따라 세워진다. 이로써 학교는 일반 가정집 또는 상업용 건물 보다 피해가 적다.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경보 및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화재 생명 보호 시스템(Fire Life Safety Systems)도 갖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상사태 발생시, 학교는 학생들을 가장 안전한 장소로 옮길 것이다. 화재나 지진 발생시, 학생들은 교실을 나와서 집회 장소 즉 대개는 학교 운동장으로 모이게 된다.

비상사태 발생시, 자녀를 픽업하기를 원하는 부모들은 학교 주위의 리유니온 게이트(Reunion Gate)로 갈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 학교가 학생들을 보내는 바로 그 장소가 된다. *자녀의 이머전시 카드에 기재된 이름의 사람만 학생을 픽업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모는 이머전시 카드의 내용이 최신의 것으로 정확하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머전시 연락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학교에 통지하도록 한다.*

폭력 위험이 있을 경우, 학생들은 위험이 없는 교실로 들어가 보호받을 것이다. 락 다운 비상시, 경찰이나 셰리프가 교정이 안전하다고 발표하기 전에는 부모는 자녀를 픽업할 수 없을 것이다. 부모는 학교가 자녀를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부모에게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 때에 한해서 학생을 보낼 것이다.

비상사태 발생시 부모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부모는 비상사태 발생시 학교의 비상 절차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자녀를 어디서 픽업해야 하는 지를 알고 있다면 시간도 줄이고 불안감도 적어질 것이다. 학교는 모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시 대책이 준비되어 있고, 비상시 이런 대책을 따를 것이라는 것을 부모들은 유념하도록 한다

자녀들은 비상사태 발생시 부모가 자신을 인도하고 도와줄 것을 기대하며 따라서 차분하고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자녀도 동일한 태도를 보여줄 것이다. 비상사태로부터 회복되고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이런 점은 큰 역할을 한다.

해당 학교의 비상 대책에 대한 문의는 학교 행정인에게 연락할 것을 권한다. 교육구 이머전시 플랜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이머전시 서비스 부서에 (213) 241-3889로 연락한다:



의료 및 건강 정보

처방약 투여

교육법 제 49423조에 의하면, 정규 학교 일자 동안 의사가 처방한 약을 복용해야 하는 학생은, 교육구 간호사에게 다음을 제출한 경우 학교 간호사 또는 기타 담당 교직원이 도와줄 수 있다

1. 해당 의사가 해당 처방약의 복용법, 양, 복용 시간 간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적은 진술서를 제시하는 경우 그리고
2. 위의 의사의 진술서에 설명된 바와 같이 학생이 약을 복용함에 있어서 교육구의 도움을 희망한다는 내용서를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제출하는 경우.

서면 동의서 없이, 학생은 약을 교정에서 소지하거나 복용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구가 적절한 문서를 받았을 경우, 학생이 특정 약을 소지하거나 자신 스스로 투여할 수 있다. 교육구에게 적절한 문서가 제공된 경우, 학생은 특정 약물(예: 흡입용 천식 약 또는 자동-투여가능한 에피네프린 약)소지하거나 혼자 힘으로 복용할 수 있다. 다음이 포함된다:

1. 약명, 복용법, 복용량, 복용시간 그리고 학생이 혼자 스스로 복용할 수 있는 약이라는 것을 자세히 적은 의사 처방 관련 문서; 그리고

2. 2.학생 혼자 힘으로 복용해도 좋다는 허락 내용을 적고, 양호사와 의료 케어 직원이 복용약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을 경우 학생 의사에게 연락해도 좋다는 허락 내용 그리고 부작용 발생 시 교육구나 교직원에게 책임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적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진술서. 필요한 서류 양식은 양호사나 행정관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특정 천식 치료법(Asthma Action Plan)은 학생이 학교에서 천식약을 소지하고 스스로 복용하기에 충분할 수 있다. 위에 설명된 방법 이외의 방식으로 복용약을 사용한 경우, 해당 학생은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필수 양식서를 양호사나 행정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학교 보건 관련 직원은 처방전을 작성하지 않으며 처방약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지 않는다.

예방 접종

의사 또는 보건국이 작성한 예방 접종서를 등록시 제시하지 않거나 현시점에서 접종해야 하는 모든 예방 주사를 접종하지 않은 경우, 신입생은 입학되지 않을 것이다. 등록 당시 백신이 추가로 요구되는 학생 또는 서면상 기록을 제시 못한 학생에게 유예기간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교육구에 처음으로 등록하거나 교육구에 속한 타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등록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에 요구되는 모든 예방 접종을 완료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예방 접종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검열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될 것이다. 주(state) 시행 수칙을 충족시키지 못한 학생들은 해당 필수 조건을 만족시킬 때까지 학교에 출석할 수 없다.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전염성 질병에 노출된 학생은 보건부서의 재량에 따라 출석을 못할 수도 있다.

의사는 자녀의 일부 또는 전체 예방접종을 면제시킬 수 있다(예: 의료 상태). 부모의 사적 또는 종교적 믿음으로 인해 자녀를 면제시킬 수 있다. 담당 의사 또는 차일드케어 제공자에게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한다.

결핵 일소

모든 유치원 학생 및 유치원에 재학한 적이 없는 1학년 신입생 그리고 초기 교육 센터에 입학하는 학생은 입학하기 전 1년 내에 실시한 망투 결핵 검사의 결과가 적힌 개인 의사 또는 보건부가 작성한 기록서(예방 접종 기록)를 서면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피부 반응 검사가 양성으로 나온 학생은 흉부 X-레이를 필수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에서 재학한 적이 전혀 없으면서 1-12학년에 등록하는 신입생들은, 이전에 실시한 망투 검사의 결과를 문서화한 기록을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기타 학교 (공립, 사립 또는 종교계 학교)로부터 1-12학년에 등록하는 학생은 학년에 관계없이 필수 조건이 면제된다.

건강 검진

모든 1학년생들은 입학하기 전 18개월 이내에 또는 1학년 입학 후 3개월까지 종합건강 검진 및 의료 평가를 요하는데 이는 아동 보건 및 장애 방지(CHDP)의 지침 사항과 일치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CHDP 또는 이와 상응하는 검진은 개인 의사, 보건국 진료소 또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교육구 CHDP 직원이 실시할 수 있다. 초기 유아 프로그램에 진학하는 모든 학생은 반드시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 요구되지 않지만, LAUSD를 처음으로 등록하는 학생은 최근의 건강 검진서를 학교에 제출할 것을 권한다. 이런 용도의 양식서는 양호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의료 보험이 없거나, 부분 보험이거나 또는 부모가 메디칼 수혜자인 경우, 자녀는 학교에서 **CHDP**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 있다. **CHDP** 검진에서 요구하는 필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 양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만약 부모/보호자가 학교에서 자녀의 건강 검진을 받기를 원치 않을 경우, 해당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진술서를 행정관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특수교육 프로그램에서 요하는 건강검진은 의사 자격증이 있는 학교 의사나 일반 개인 의사가 실시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49452.8**에 의하면, 유치원 또는 **1학년**때, 공립학교에 처음 취학한 해의 **5월 31일**까지 자녀의 구강 건강 검진이 요구되는 규정이 현재 실시되고 있다. 이런 검진은 공인 치과의사, 기타 공인 또는 등록된 치과 건강 전문인에 의해 실시되어야만 한다. 구강 건강 검진은 자녀가 학교에 취학하기 전 **12개월** 전에 실시된 검진도 본 규정을 충족시킨다. 자녀를 이런 검진에 데려가지 못하는 경우, 이런 의무규정으로 제외를 원한다는 면제서를 요청할 수 있다.

주(**state**)의 의무 조항에 의거하여, 시력 검사 및 청력 검사는 학교에서 실시될 것이다. **7학년** 여학생 및 **8학년** 남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척추 측곡 (척추가 한 방향으로 기우는) 증상이 있는가를 검사하게 된다. 위의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에서 발견한 내용이 앞으로 주의가 요하는 경우, 부모/보호자는 해당 내용을 통지 받게 된다.

학교와 학교 대항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9학년**부터 **12학년** 학생은 의사 자격증이 있는 의사가 실시한 건강 검진을 매년 받아야 하며, 이는 현행 교육구 방침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 의사가 없는 학생은 학교 의사 및 간호사 프랙티션널과의 예약을 통해 학교 대항 운동경기 참여에 필요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예약 관련 정보는 학생 의료 서비스 부서에(**Student Medical Services**) (213) 765-2831로 연락한다.

임시 장애 학생

주법에 의거하여, 비전염성 의료 상태로 인하여 일반 교육 또는 대안 교육 프로그램에 잠정 기간동안 출석할 수 없는 유자격 **K-12**학년생은 학생의 집 또는 병원(**Home/Hospital instruction**)에서 학습 지도를 제공받는다. 잠정적인 장애 기간 학생의 학습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의도이다. 집/병원 이동교사가 학생의 학교 프로그램과 상호 관련있는 학과목의 학습지도를 가급적 최대한의 범위에서 제공한다. 홈/호스피탈 학습지도는 임시적인 잠정 서비스로 고안되었다. 장기간동안일 경우 정규 필수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대체하지 않는다. 홈/호스피탈 학습지도는 **(1)** 학생의 참여 능력에 근거하여 시작해도 좋다는 허락이 있을 때 그리고 **(2)** 교육 의무의 임시 이전을 부모가 허락한다는 동의서를 받는 즉시 시작될 것이다.

잠정 기간동안의 홈/호스피탈 학습지도는 현재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이 있는 학생 또는 다음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는 세션 **504** 학생들에게도 제공된다.

전염병 예방

전염병 검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전염병이 걸린 가능성이 있는 학생은 재출석 시행 수칙이 충족될 때까지 학교에 출석

할 수 없다. 출석 제외 및 재출석 지침사항은 교육구 그리고 주 보건부와 주 교육부에서 정한 방침을 따른다. 전염병 관련 지침사항은 질병 통제 및 예방국, 미 소아과 협회와 미 양호사 협회와 같은 국가 기관으로부터 나온 내용이다.

학생에 대한 임시 출석 금지는 전염병인 경우에 해당되며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결막염(**"삼눈-pink eye"**); 피부 염증(농가진), 패혈성 인두염, 수두, 옴, 머릿니, 백일해. 출석금지는 즉시 행해지거나 당일 학교가 끝날 무렵에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질병, 전염 속도 그리고 교육구, 카운티 및 주 방침에 달려있다. 재출석은 학생이 상태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은 경우에 의한다.

학교가 수두(**chickenpox**), 머릿니, 기타 위험할 수 있는 전염병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학부모/보호자들에게 통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자녀가 수두에 노출되는 경우 특히 위험한 상태가 초래될 수 있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들은 학교 간호사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학생은 면역체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를 지닌 학생 그리고 백혈병 또는 장기이식 치료 동안 특정 약을 복용하는 학생을 포함한다. 머릿니 치료 및 예방법은 양호사나 학교 보건 직원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학생 건강 보험

LAUSD's Children's Health Access, 메디칼 프로그램 (**CHAMP**)을 통해 부모들은 **Medi-Cal**, **Healthy Families**, **Healthy Kids**, **Kaiser Child Health Plan**과 같은 무료 또는 저렴한 의료 보험에 자녀를 등록시킬 수 있다. 이민 신분과 관계없는 프로그램도 있다. 관련 정보나 등록할 때 도움이 필요하면 **CHAMP 무료전화 HELPLINE에 1(866) 742-2273**로 전화하거나 <http://CHAMP.lausd.net> 를 검색하도록 한다. 부모는 이런 도움을 통해 **0-18세** 자녀의 의료보험을 접하고, 활용 및 유지할 수 있다. 학교는 **CHAMP** 부서에 연락하여 교직원과 부모들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 행사 일정을 잡을 수 있다.

위에 언급된 보험을 용이하게 참고하기를 원하는 경우, 본 안내서 뒷면에 있는 **CHAMP 건강 보험 비교 도표 2008-09(Health Insurance Comparison Chart 2008-09)**를 참고하십시오.

기타 건강 관련 정보

봉합, 김스, 목발, 부목대 또는 휠체어를 탄 상태로 재등교하는 학생은 재등교를 허락한다는 의사의 서면 허락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학교 행정관 및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이 요구하는 모든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중병, 장기 질환, 수술 또는 기타 입원(정신과 및 약물 또는 알콜 외래 치료) 후에 재등교하는 학생은 재등교를 허용한다는 의료 제공자의 서면 허락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체육 활동과 관련한 추천 사항이 있을 경우 포함시킨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잠정 기간동안 일반 교과과정 또는 수정 교과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은 체육으로부터 면제(**10주 미만**)될 수 있다. 체육을 면제 해달라는 학부모의 요청서는 최고 **5일**까지 허용되며; 그 이상의 날짜에 대하여서는, 자녀의 의료 제공자가 작성한 서면 요청서가 필요하다.

자녀가 사고나 부상에 처한 경우 부모에게 즉시 연락을 취하기 위해 최근 내용으로 작성된 교육구 긴급(Emergency) 정보 카드는 학교 파일 반드시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

적십자사의 협력하에 헌혈 행사가 고등학교 교정에서 실시될 수 있다. 학부모에게 예정된 헌혈 행사에 대한 통지를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17세 이상의 학생이 헌혈에 참여하기 위해 학부모/보호자의 서면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다.

학교는 부모의 동의없이, 7학년부터 12학년생이 의료 서비스를 비밀로 받을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학교 수업을 면제해 줄 수 있다.

교육법 제 35183.5조 규정에 의하면, 실외의 휴식시간 또는 체육 시간 동안 보호용 장비(모자, 선바이저 그리고/또는 선글라스) 착용이 허용된다. 학교는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35183.5조에 의거하여 자외선 차단용 의복/모자의 유형을 규제할 수 있다. 학교는 보호용 물품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 학생들은 교정에서의 실외 활동 시 허용될 수 있는 자외선 보호품으로서 선스크린(의사 처방 없는 제품)도 사용할 수 있다.

학교에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학교-중심 의료 서비스

다음의 의료 관련 정보는 메디칼이 자격있는 장애학생의 부모를 위해 제공되었다.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IDEA)에 의거하여,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자녀의 IEP에 명시된 모든 의무 서비스를 부모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하지만, LAUSD는 연방 정보의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서비스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즉 이는 모든 LAUSD 학생을 위한 건강 관련 서비스 능력을 증가시킨다.

현재, 메디칼로부터 그 비용을 상환받는 서비스에는 장애학생을 위한 특정 서비스뿐 아니라 모든 학생을 위한 특정 건강 서비스가 포함된다. 장애학생을 위한 건강 관련 서비스는 학생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에 명시된 평가 및 치료(들) 둘다 포함된다: 전문 청력검사, 카운슬링, 양호 서비스, 작업 요법, 물리요법, 언어 교정 및 이런 서비스 관련 교통편. 메디칼 법규는 병원, 재활 센터 및 기타 시설의 제공자들과 동일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학교-중심 제공자들에게 요구한다.

부모가 특수 교육 평가 플랜이나 IEP에 동의 서명하는 것은 즉, 메디칼 유자격 학생의 부모는 LAUSD가 메디칼 해당 서비스 비용을 메디칼로부터 상환 청구서 제출을 허락한 것이다. 청구 빈도는 평가 허락서와 일치하며 그리고/또는 부모가 학생의 IEP에 위임한 메디칼 자금 서비스의 종류와 빈도와 일치한다. 이런 상환 청구서, LAUSD는 학생 기록, 의료 정보 그리고/또는 학생 관련 기타 정보 공개가 필요할 수 있다. 학교-중심 메디칼 비용 상환은 자녀가 기타 장소에서 메디칼 서비스를 받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장애학생에 대한 메디칼 비용 최고 제한이 없다. LAUSD는 학생의 IEP에 명시된 건강 케어 서비스 비용을 가족의 사설 보험에 절대로 청구하지 않는다. 본 교육구는 장애학생들에게 적절한 공립교육을 무상(FAFE)으로 제공해야하는 필수조건과 IDEA를 엄격히 준수한다. 부모가 LAUSD 메디칼 부서로부터 부모 메디칼 비용 청구 비-위임서를 요청하면, 메디칼 유자격 자녀의 부모는

LAUSD가 자녀에게 제공된 서비스 비용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전화번호는 213-241-0558이다.

아동의 메디칼 자격 기준은 가족의 소득과 장애를 포함한 여러 요소에 근거한다. 메디칼 관련 정보를 원한다면, 무료전화 LAUSD CHAMP 부모 헬스케어 지원번호에 1-866-742-2273으로 전화하십시오.

건강 보험 이전성 및 책무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HIPAA) 사생활 보호법에 의해, 개개인은 의료 제공자의 업무 내용 그리고 당사자의 건강정보를 사생활 보호권리에 대해 알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 의료 제공자는 이런 권리와 업무 내용에 대한 명백한 설명을 제공하는 통지서를 만들어 배포해야만 한다. 첨부된 “사생활 보호 업무 관련 통지서(Notice of Privacy Practices)는 이런 통지가 되며, 질문이 있다면 Bonnie Mims-Greene에게 (213) 241-3851으로 연락하도록 한다.



테스트 및 학력평가

표준 학력고사 및 결과 발표

표준 학력고사 및 결과 발표- STAR은 주 학력평가 제도의 중요한 부분이다. 매년 봄에 실시되는 STAR 프로그램은 1997년 주법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학생들이 캘리포니아 학습기준에 식별된 지식 및 기술을 얼마나 잘 배우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함이다.

2학년에서 11학년에 속한 모든 학생들은 STAR 프로그램 테스트를 치러야 하며, 이에는 영어 학습생과 장애학생도 포함된다. 부모/보호자가 STAR 프로그램의 면제를 원하는 서면 요청서를 제출한 학생들만 본 테스트를 치르지 않는다.

개별 학생 성적은 기밀에 부쳐지며, 단지 학생, 담당 교사, 교장 그리고 학부모/보호자들만 학생의 시험 결과를 볼 수 있다.

STAR 프로그램은 4가지 테스트로 구성된다:

1. 캘리포니아 학습기준 테스트(California Standards Test-CSTs)는 캘리포니아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개발되었고, 영어(2-11학년), 수학(2-11학년), 역사-사회 과목(8, 9, 10, 11학년), 과학(5, 8, 9, 10, 11학년), 4학년과 7학년생들은 영어-언어 영역 CST의 일부로 작문 시험을 치른다.
2. 캘리포니아 학력고사, 제 6판(California Achievement Tests, Sixth Edition Survey-CAT/6) 미 전국에서 가르치는 주요 학과의 학문적 지식과 학력을 테스트하며 3학년과 7학년의 읽기, 언어, 스펠링, 수학 실력을 미 전국의 학생들과 비교한다.
3. 캘리포니아 대안 수행도 평가(California Alternate Performance Assessment-CAPA)는 중증 인지적 장애 학생을 위한 개발된 것으로서, 주 학습기준 영역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CAPA는 2-11학년이면서 IEP에 CAPA 시험이 표기된 학생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4. 아프렌다: La Prueba de Logros en Espanol, Tercera Edicion(아프렌다 3) 스페니쉬로 수업을 받거나 미국

학교에 등록한지 12 개월 미만되는 8-1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스페니쉬 구사하는 학생의 스페니쉬 기초 실력 테스트이다.

5. 캘리포니아 학습기준-중심 스페니쉬 테스트(California Standards-Based Test in Spanish-STST)는 스페니쉬를 구사하는 2-7학년생을 대상으로 모국어로 수업을 받거나, 미국 학교에 등록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학생들에게 요구된다.
6. 캘리포니아 수정 학력평가(California Modified Assessment-CMA)는 학년 수준의 수업을 받는 IEP를 가진 학생으로서 여러 도움을 받지만 학년별 능숙도를 그 학년도에는 달성할 가능성이 적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학년별 학력평가이다. CMA 형식은 학력평가를 접할 수 있도록 수정시켜서, 학생이 영어, 수학 및 과학 학과목에 대한 성취도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조기 평가 프로그램

CSU-EAP는 11학년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학-수준의 학업을 따라갈 수 있는지를 조기에 평가받기를 원하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STAR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자녀의 교사 또는 학교 사무실로 연락하십시오. 추가 정보는 다음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받을 수 있다: <http://www.cde.ca.gov/ta/tg/sr/>

캘리포니아 고교 졸업시험

1999년에 제정된 주 법규에 의거하여,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학생은 고교 졸업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 고교 졸업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2006학년도부터, 모든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학생들은 고교 CAHSEE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고, 모든 기타 주 및 관할 시 필수조건을 충족시켜야만 고교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다.

CAHSEE 시험은 영어 언어 영역과 수학, 두 과목을 포함한다:

1. 영어 및 수학. 영어 시험은 선다형 문제와 작문으로 구성된다. 선다형 문제는 학업 분석력, 독해력, 문학적 반응 및 분석, 작문 전략, 작문 관용법(스펠링, 문법, 및 구두법)을 평가한다. 선다형 문제에 더불어, 학생은 주어진 주제에 대해 에세이를 작성하거나 문학 작품 또는 정보 문구에 대한 자신의 응답을 논술해야 한다.
2. CAHSEE의 수학 영역은 주 수학 학습기준을 평가하며, 통계, 자료 분석 및 확률, 숫자 개념, 측정 및 기하, 대수 및 함수, 수학 논리, 대수 I이 포함된다. 학생은 계산력 및 산수 기초력이 단단함을 보여주어야 하고, 소수점, 분수, 퍼센트 계산도 포함된다. 수학 영역은 전부 선다형 문제로 구성된다.

모든 학생은 10학년때 처음으로 CAHSEE 시험을 치르며, 10학년때 CAHSEE 시험의 두 개 영역 중 하나 또는 양쪽 영역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5번의 추가 기회가 주어진다. 통과하지 못한 영역만 재시험을 치른다. 학교들은 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수업을 제공한다.

CAHSEE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자녀의 담당 카운슬러에게 연락하십시오. 부모는 CAHSEE 시험일 후 9-10주 후 시험 결과를 통고받는다. 추가 정보는 다음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받을 수 있다: <http://www.cde.ca.gov/ta/tg/hs/>

캘리포니아 영어 언어 개발 시험

1999년에 제정된 주 법규에 의하면, 교육구는 모든 영어 학습생 그리고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의 모든 EL(English Learners) 신입생의 영어 언어 개발도를 평가해야 하며, 이는 각 학생의 듣기, 말하기, 읽기 및 쓰기 영어 능숙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CELDTS는 모국어가 비영어권에 속한 해당 교육구의 모든 신입생을 대상으로 치러져야만 하고, 다만 다른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 이 시험을 치른 경우는 예외이다. 재배치된 영어 학습생을 제외한 식별된 모든 영어 학습생들은 매년 CELDTS 시험을 치러서 일년동안 영어 언어 개발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를 평가받는다.

해당 학교의 학사 일정에 준하여, 가을 학기 중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영어 학습생으로 이미 식별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CELDTS는 실시된다. 모국어가 비영어권인 신입생은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등록한 날짜로부터 30일 내에 CELDTS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

CELDTS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자녀의 교사 또는 학교 사무실로 연락하십시오. 추가 정보는 다음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받을 수 있다: <http://www.cde.ca.gov/ta/tg/el/>

체력 검사

주 법규에 의거하여, 교육구는 모든 5, 7, 9학년생을 대상으로 매년 체력 검사(PFT)를 실시해야만 한다. 주 정부에서 지정한 PFT는 코퍼 에어로빅 리서치 기관이 개발한 피트니스그램(FITNESSGRAM®)이다. FITNESSGRAM®은 건강-관련 체력 평가하고, 학생이 일생동안 정기적인 신체 활동을 습관화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테스트이다.

종합 피트니스그램 테스트는 다음 영역에 대한 학생의 능력을 측정한다:

1. 심폐 용량 즉 에어로빅 용량
2. 신체 조직
3. 근력, 지구력 및 유연성

교사 및 행정관은 체력 검사에 해당되는 기술과 능력에 대한 학습지도와 적절한 연습을 통해 학생들이 체력검사에서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 학교는 해당 학년도 동안, 정기 체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적절한 연습을 제공할 것을 추천한다. 해당 학교의 학사 일정에 따라, 2월부터 5월 사이에 체력검사가 실시된다.

2년(중고교)의 체육 과목 이수로부터 면제받으려면, 피트니스그램 체력검사 “통과”가 요구되는 첫번째 대상 학생들은 2008년 신입생들이다. “통과” 점수란 6개 종목 중 5개를 건강 체력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부모는 자녀가 정기적으로 신체 운동에 참여하고 적절한 영양 상태인지 확인하도록 한다.

FITNESSGRAM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자녀의 교사에게 연락하십시오. 추가 정보는 다음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받을 수 있다: <http://www.cde.ca.gov/ta/tg/pf/>.

학력고사 시험 날짜들은 www.lausd.net에서 “Parents”를 클릭하고 “Testing”을 찾으면 알아볼 수 있다. 자녀 학교의 시험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다면, 교장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런 정보는 2008년 7월 1일부터 제공될 수 있음을 유념하십시오.)



기타 중요 정보

수업 시작 전, 방과후 프로그램

교육구 산하 단체인 비온드 더 벨(Beyond the Bell-BTB) 부서는 수업 시작 전, 방과후 프로그램, 연장 학습 기회(Extended Learning Opportunities), 보충 교육 서비스(Supplemental Educational Services), 학생 보조 서비스(Student Auxiliary Services), 학교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아래에 간략한 내용 설명이 되어 있으며, 추가 정보는 (213) 241-7900으로 전화하거나, BTB 웹사이트를 www.btb.lausd.net 검색 또는, BTB 사무실 주소 333 South Beaudry Ave., 29th Floor, Los Angeles, CA 90017을 통해 받을 수 있다.

- 수업 시작 전, 방과후 프로그램 - 로스앤젤레스 전역에 있는 커뮤니티 단체와의 파트너십 하에 BTB는 훈련받은 직원의 감독하에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학업 지원, 심화 활동,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제공한다. 여러 파트너들과 함께 BTB는 튜터링, 멘토링, 시각 및 공연 예술 및 여러 체험 기회도 선정된 학교에 제공한다.
- 연장 학습 기회 - BTB는 학년별 학습기준에 미달되는 학생 그리고 캘리포니아 고교 졸업시험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교생들에게 추가 학업 지원을 통한 연장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학습기준에 미달될 위험이 있는 학생들은 학년초에 일찍 식별되어, BTB 연장 학습 프로그램(BTB Extended Learning Program-ELP), 영어 언어 취득 프로그램(English Language Acquisition Program-ELA), 긴급 이민자 프로그램(EIEP), 이주자 교육 프로그램(Migrant Education Program), BTB 토요일 연장 학습 아카데미(ELA), 토요일 의무 학습 아카데미(the Saturday Required Learning Academy-RLA), 섬머 스쿨/인터세션 프로그램 그리고/또는 학습기준에 준한 진급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제공한다.
- 보충 교육 서비스 - 2001년 *낙오자 없는 교육법(No Child Left Behind Act)* 하에, BTB는 2년이상 프로그램 개선(Program Improvement) 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유자격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 교육 서비스(SES)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 학업/튜터링 서비스인 SES는 수업 시작 전, 방과후, 주말, 오프 트랙 기간 동안

주정부 공인 제공자들에 의해 실시된다. 유자격 자녀의 부모는 각 제공자와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설명된 책자를 우편으로 받는다. 유자격 자녀의 부모는 요청서를 작성해서 마감일 전에 BTB에 우송해야만 자녀를 참여시킬 수 있다.

- 학생 보조 서비스(Student Auxiliary Services) - BTB 학생 보조 서비스는 안전하고, 전인적이며 잘 감독된 활동을 제공하며, 이는 교육을 교실 밖으로 그리고 정규 학교 시간 이후로까지 연장시키고 또한 학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 서비스에는 학생, 학교, 교직원 및 커뮤니티를 위한 보조 서비스뿐 아니라 필수적인 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이 포함된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대부분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하교 시간 이후부터 오후 6시까지 제공되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인 유스 서비스(YS); 클리어 클릭 및 포인트 퍼민 야외 교육 센터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캘리포니아 주 과학 학습기준을 지원하고 인간 관계 활동을 접목시킨 야외 교육 프로그램; 키드케어 프로그램, 청소년 개발 프로그램, 시정부 센터 퍼민 고용인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과 같은 기타 프로그램들.
- 학교 자원봉사자 프로그램(School Volunteer Program) - SVP는 각 학교가 필요에 따라 맞춤형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도움을 제공하자는 취지하에 만들어진 학교 커뮤니티 참여 프로그램이다. SVP는 학교 자원봉사자 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고, 학교 자원봉사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며, 학부모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트레이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월간 신 문 인 *Hurray for Teachers and Hurray for Volunteers*를 발행하여 모든 학교와 각 부서에 배포함으로써 학교 자원봉사자의 노고와 기여에 감사를 표한다.

아침 및 점심 급식

LAUSD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아침 및 점심 급식을 제공한다. 급식 스케줄은 자녀 학교에서 알아본다. 아침 급식은 초등학교에서는 \$0.60, 중학교에서는 \$1.00로 제공된다. 점심 급식은 초등학교에서는 \$1.00, 중학교에서는 \$1.50에 제공된다. 무료 및 저렴한 가격의 급식 신청서는 자녀 학교에서 받을 수 있다. 저렴한 급식에 대한 자격이 있는 학생은 아침 급식은 무료이고 점심 급식은 \$0.40이다.

LAUSD 급식 서비스 부서(Food Services Branch)는 미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학교 아침 급식 프로그램(National School Breakfast Program-SBP) 과 두번째로 큰 규모의 전국 학교 점심 급식 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NSLP) 운영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매일 대략 5십만명의 학생과 만6천명의 교사와 행정관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에 상응된다. 더불어, 445여개교의 학교 카페테리아와 102개의 차일드케어 급식 프로그램, 뉴먼 영양 센터에 매일 십일만개의 급식을 준비하여 현장에서 급식 준비가 가능치 않은 237개교에 이를 추가로 배포하고 있다.

SBP와 NSLP는 영양있는 학교 급식 제공을 통해 배고픔과 영양실조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더불어, 아침

및 점심 급식뿐 아니라, 다수의 LAUSD 학교는 방과후 간식 프로그램, 토요일 급식 서비스 및 섬머 식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SBP와 NSLP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급식 서비스 부서는 반드시 USDA에 의해 정해진 영양 지침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급식 서비스 부서는 더 높은 기준을 설정했고, 총 지방, 포화 지방, 열량, 나트륨, 첨가물, 색소 및 전이 지방의 제한 그 이상을 충족시키고 있다. 메뉴는 공인 영양사에 의해 계획되며, 자녀의 학교 또는 아래 기재된 웹사이트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만약 자녀에게 특별 식단이 요구되는 경우, 카페테리아 매니저나 학교 양호사로부터 “특별 식단을 요청하는 의뢰서 (Medical Statement to Request Special Diets)”를 받도록 한다.

메뉴 세부 지침뿐 아니라, 급식 서비스 부서는 USDA 법규를 준수해야지만 제공된 급식에 대한 자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상환금은 급식 서비스 부서의 유일한 재원이다. USDA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대부분의 학생은 매 학년초 급식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무료 또는 저렴한 급식에 대한 자격을 받게 된다. 이런 신청서는 여름에 학교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된 학생 주소의 집으로 우송된다. 한 가계당 한장의 신청서만 요구된다. 중복 신청서는 귀하의 서류 처리를 지연시킬 것이다. 신청서를 가급적 신속히 작성하여 급식 서비스 부서로 우송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서류 처리가 된 후, 자격 여부 서신이 집 주소로 우송될 것이다.

신규 신청서는 반드시 학년 개학 후 첫 1개월 내에 접수시켜야 한다; 이는 “유예 기간”으로 알려져 있다. “유예 기간”이 끝난 후, 신규 신청서가 없는 학생은 신청서를 접수시키고 자격이 결정될 때까지 정규 풀 가격을 지불해야만 급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급식 서비스 관련 질문이 있다면, 답변받을 수 있는 최상의 장소는 자녀 학교의 카페테리아 매니저이다. 이들은 급식 서비스, 급식 조리, 위생, 안전, 및 제공되는 여러 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

주요 연락 번호

신청서 및 자격	(213) 241-3185
메뉴 및 영양 정보	(213) 625-5536
급식 서비스 부서	(213) 241-2985

추가 정보를 원한다면, www.cafe-la.org를 통해 알아본다.

교통편

통학버스는 공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자격 학생에게만 제공된다. "귀하의 자녀 통학버스 스케줄 공식 통지서(Official Notification of your Child's Transportation Schedule)"는 개학하기 전에 우송되고 이에는 버스 노선, 통학버스 규율, 연락처, 기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음을 유념하십시오.

- 부모는 자녀와 함께 통학버스 규율을 잘 살펴본다.
- 부모와 자녀는 개학일 전 버스 승차지를 직접 가보고, 자녀가 이곳을 가장 안전하게 왕복할 수 있도록 알아야 한다.

- 학생은 통학버스 승차 시간 보다 5전까지 도착하여 바로 승차할 준비를 해야 한다.
- 자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데려다 주고 픽업할 때 부모나 지정된 성인은 매일 버스 정차 장소에 있도록 한다.
- 부모와 학생은 통학버스 노선 번호와 학교명을 알고 있어야 하고, 버스가 15분 이상 늦는 경우 버스 디스패치에게 (800) LA-BUSES로 전화한다.
- 통학버스 승차차 시간은 노선 조정, 등하교 시간 변경, 교통 사정이나 날씨 상태로 인해 변화될 수 있다.
- 부모는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시, 특수 교육 학생으로서 위임된 성인이 변경된 경우 학생의 학교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소교육구 특수 교육 부서로 이를 즉시 알린다.

학생 사고 보험

학교 대항 운동경기 참여 학생은 주 교육법 제32220-32224항에 의거하여 의료 또는 사고 의료 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의료 및 건강 정보 하의 “학생 건강 보험”에 참고된 건강 보험 플랜은 부모들이 주법을 준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운동, 사고 및 질병을 커버하는 공공 및 사설 보험 관련 정보를 원한다면, 위험 관리 부와 보험 서비스 부(Office of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Services-ORMIS)에 (213) 241-2176으로 연락하십시오. 사설 보험 정보도 LAUSD 웹사이트 www.lausd.net에 위험 관리 부와 보험 서비스에서 찾을 수 있다.

무료 및 저렴한 건강 보험 정보는 LAUSD 아동 헬스 액세스 또는 메디칼 프로그램((Children's Health Access and Medi-Cal Program-CHAMP)에 무료전화 HELPLINE에 1-(866) 742-2273로 전화하거나 그리고/또는 <http://CHAMP.lausd.net>를 검색하도록 한다

방부 처리한 유기체 및 생체를 사용하는 과학 실험의 대안

교육구 방침 및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32255.1조에 의거하여, 동물을 대상으로 한 과학 실험 수업을 도덕적 사유로 인하여 거부하는 학생에게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거나, 대체 수업 활동이 제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대체적인 수업에 배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부모의 노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배정된 수업은 과학 수업과 상응하는 시간과 노력을 학생에게 요구되는 것이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종합 성 건강 및 HIV/에이즈 예방 교육법에 준한 성교육 과목

학교는 다음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1. 의도치 않은 임신 및 성병 예방을 위해 자신의 성 생식 기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2. 모든 학생이 사춘기의 발육, 발달, 신체 이미지, 남녀 역할, 성적 기호도, 연애, 결혼 및 가족에 대해 건전한 태도를 개발하도록 장려한다.

통지서 및 부모의 면제 요청:

학교는 학생들이 부모 또는 보호자들이 함께 인체 성적 관심 및 HIV/에이즈에 대해 대화를 하도록 장려하고, 이런 주제에 대한 자녀 교육을 감독할 부모 또는 보호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는 부모 및 보호자가 종합 성 보건 교육과 HIV/에이즈-예방 교육 관련 자료 평가와 관련된 검사를 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부모가 자녀가 이런 교육이나 평가에 일부 또는 전부 참여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사안에 대해, 학교는 인간의 성적 관심과 관련된 가치관을 전달하는 궁극적인 책임은 부모와 보호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자녀가 종합 보건 교육 또는 HIV/에이즈 예방 교육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부모나 보호자는 반드시 학교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자녀가 종합 성 보건 교육, HIV/에이즈-예방 교육, 다음 상황 하의 교육 관련 평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참여할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1. 매 학년초 또는 그 이후에 등록한 학생에게, 교육구는 성 보건 교육, HIV/에이즈-예방 교육 및 이런 교육에 사용될 학생 보건 행동에 대한 리서치에 대한 것을 부모나 보호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부모나 보호자에게 보내는 통지서에는 다음의 정보를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 종합 성 보건 교육 및 HIV/에이즈-예방 교육에 사용될 문서 및 시청각 교육자료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교는 교육구 직원을 통해 종합 성 보건 교육 및 HIV/에이즈-예방 교육을 가르칠 수 있으며, 만약 외부 자문인이 이런 내용을 지도하는 경우, 학교는 부모나 보호자에게 이런 교육이 초청 연설인을 통해 교실 수업 또는 조회 시간동안 실시된다는 것을 알리고, 다음 정보도 추가하여 반드시 통지해야만 한다; (a) 수업 일자; (b) 각 초청 연설인, 강사의 소속 기관 또는 관련 단체 명칭; 그리고 (c) 제 51933항, 제 51934항의 부조항 사본을 요청할 수 있는 부모나 보호자의 권리. 더불어, 외부 자문인 또는 초청 강사에 의한 교육이 학년 초 이후에 주선된 경우, 이런 교육이 실시되기 14일 이전에 우편 또는 일상적인 부모 통지 방법을 통해 부모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만 한다.
 - 부모나 보호자는 캘리포니아 종합 성 보건 교육 및 HIV/에이즈 예방 교육법 제 5.6조에 대한 사본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
 - 부모나 보호자는 자녀가 종합 성 보건 교육 및 HIV/에이즈-예방 교육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요청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
2.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가 이런 테스트, 질문서, 설문서, 검사를 실시하라고 서면으로 통지하고,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가 학생이 이런 활동에 참여해도 된다는 서면 허락서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는 제 51513조에 필수 조건 즉, 성에 대한 학생의 사적 믿음 또는 행위, 가족 생활, 도덕성 또는 종교에 대한 질문이 포함된, 또는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의 성에 대한 믿음과 행위, 가족 생활, 도덕성, 종교에 대한 질문이 포함된 어떠한

질문서, 설문서, 검사 도 K-12학년 학생들에게 실시할 수 없지만, 학교는, 본 법규에 의거하여, K-12학년생 대상으로 학생의 건강 행동 및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익명으로, 자발적으로, 기밀 리서치 및 기밀 평가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는 성 관련 학생의 태도 또는 행위에 대한 연령에 적합한 질문을 포함한 테스트, 질문서, 설문서가 포함되며, 이는 부모나 보호자에게 이런 테스트, 질문서, 설문서가 실시될 것이라는 것을 통지하고, 부모나 보호자에게 자료를 검토할 기회와 자녀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는 경우에 속한다.

만약 학교가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자녀의 불참여 요청서를 받은 경우, 학생은 종합 성 교육 및 HIV/에이즈-예방 교육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또는 학생의 건강 행동 및 위험에 대한 익명의, 자발적, 기밀 테스트, 질문서 또는 설문서에 참여시키지 않아야 한다.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가 학생의 종합 성 보건 교육 또는 HIV/에이즈-예방 교육 참여 허락을 거절하거나, 학생의 건강 행동 및 위험에 대한 익명의, 자발적, 기밀 테스트, 질문서 또는 설문서 참여 허락을 거절하는 경우, 학생에게 징계처분, 학업 처벌 또는 기타 처벌을 내려서는 절대로 안된다.

종합 성 보건 교육, HIV/에이즈-예방 교육 동안 또는 학생의 건강 행동 및 위험에 대한 익명의, 자발적, 기밀 테스트, 질문서 또는 설문지 실시 동안, 이런 수업 또는 테스트, 질문서, 설문서 불참여를 요청한 부모나 보호자의 자녀에게 대안 교육 활동이 제공되어야만 한다.

위임된 종합 성 건강 교육

1. 교육구는 종합적인 성 건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임신, 가족 계획, 및 성병을 포함한 인체 발육 및 성적 관심에 대한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2. 교육구는 인체 성적 관심, 임신 및 성병에 대해 가장 최근의 의료적으로 정확한 리서치에 대해 알고 연수교육을 받은 교육구 직원 또는 외부 자문관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수업은 다음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 수업 내용 및 자료는 이런 수업을 받는 학생의 지성, 감성, 행동 능력에 적합해야 한다.
 - 가르치는 모든 정보는 의료적으로 정확하게 객관적이어야 하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행해진 리서치에 의해 검증 또는 뒷받침되고, 과학 전문가들 사이에서 검토되었으며, 연방 기관 및 의료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전문 단체로부터 정확하고 객관적인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수업 내용은 영어 학습자(제 306조 부조항 (a)에 설명됨) 학생들에게도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기존의 교과과정 및 영어 학습자를 위한 대안 학습과 일치해야 한다.
 - 수업 내용과 자료는 모든 인종, 성별, 성적 성향, 민족 및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생, 그리고 장애 학

생들을 대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수업 내용과 자료는 장애 학생에게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이는 수정된 교과과정, 자료, 수업 방식, 부가 자료 및 기타 방법을 통해 행해질 수 있다.
- 수업 내용과 자료는 학생이 부모나 보호자들과 함께 인간의 성적 관심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격려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
- 수업 내용과 자료는 결혼 및 서약된 관계 존중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한다.
- 7학년부터는, 수업 내용과 자료는 성적 삽입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성병 예방의 유일한 방법이고, 성적 삽입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기타 사적 및 사회적 혜택도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수업내용과 자료는 임신 및 성병 예방법에 대한 정확한 의료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 7학년부터는, 수업 내용과 자료는 성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에는 성병이 어떻게 전염되며, 모든 연방 식품약물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가 승인한 성병 전염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한 효과 및 안전도, 성병 검진 및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자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 7학년부터는, 수업 내용과 자료는 모든 임신 예방 관련 모든 FDA-승인 피임법의 효과 및 안전도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에는 응급 피임법, 기타 승인된 방법이 포함된다.
- 7학년부터는, 수업 내용과 자료는 성적 관심에 대한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 7학년부터는, 수업 내용과 자료는 3세 이하의 아기를 합법적으로 식별된 병원 또는 “안전한-포기장소”에 물리적으로 포기한 부모나 기타 사람은 기소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보건 및 안전법 제 1255.7조 및 형법 제 271.5조에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3. School 7학년 이전에 종합적인 성 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구는 바로 위의 패러그래프 8부터 12까지에 포함된 모든 일반 주제에 대한 정보를 연령에 적합하고 의료적으로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며, 7학년 이전에 시작을 할 경우, 다음 패러그래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수업 내용과 자료는 종교 교리를 가르치거나 장려하는 것이 아니어야만 한다.
- 수업 내용과 자료는 성, 인종 그룹 식별, 민족, 국적, 종교, 피부색, 정신 또는 신체 장애(교육법 제 220조에 목록화됨), 또는 조상, 성별, 성적 성향(형법 제 422.6조에 추가 목록이 있음)에 근거하여 개인에 대한 편견을 반영하거나 장려하는 것이 아니어야만 한다.

필수 HIV/에이즈 예방 교육

1. 교육구는 7학년부터 12학년 학생들에게 중학교는 최소한 1회(LAUSD의 5 교시), 고등학교에서 1회(LAUSD의 5교시) 해당 과목을 가르치는 트레이닝을 받은 교사가 HIV/에이즈 예방 교육을 제공해야만 한다.
2. HIV/에이즈-예방 교육은, 교육구 직원 또는 외부 자문관이 가르치는가에 상관없이, 위의 제 51933조의 패러그래프 1부터 6, 위의 제 51933조의 마지막 부분의 패러그래프 1과 2에 명시된 필수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미 보건부 장관, 연방 질병통제국, 전국 과학 아카데미에서 발표한 가장 최근의 정보와 추천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시켜야 한다:
 - HIV/에이즈의 특성 및 인체에 주는 영향에 대한 정보
 - 어떤 HIV가 전염되고 전염되지 않는지, HIV 감염의 가장 높은 위험을 내재한 행위에 대한 정보
 - HIV 감염 위험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토론, 성적 금욕, 일부일처제, 복수 성 파트너 회피, 정맥 약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HIV/에이즈 예방 방법이고, 성병 관련 HIV 감염 예방에 있어서 콘돔과 기타 피임제의 성공 및 실패, 정맥 주사 약물 사용으로 인한 HIV 전염 위험을 줄일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가장 최근의 의료 정보에 대한 통계에 대해 교육.
 - HIV/에이즈 관련된 일반 대중의 보건 문제에 대한 토의
 - HIV 검사 및 의료 치료를 받기 위한 관찰 자원에 대한 정보.
 - 또래 집단의 압력을 거부하는 기술과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피하기 위한 효과적인 결정력 사용에 대한 교육.
 - HIV/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견해에 대한 토론, 고정관념, HIV/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잘못된 견해, HIV/에이즈 걸린 사람들에게 대한 연민을 강조한 교육.

직원 대상 연수 교육

1. 구역별 계획, 합동 계약, 교육구 커뮤니티 내의 구성원과의 계약 서비스를 통해, 교육구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HIV/에이즈에 대한 연수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해야만 한다.
2. 교육구는 주 교육부와 HIV/에이즈를 교육할 교육구 교사들과 합동하여 HIV/에이즈-예방 교육에 대한 연수 트레이닝을 개발하고 제공해야만 한다.
3. 교육구는 HIV/에이즈-예방 교육에 대한 연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직원들이 HIV/에이즈에 대한 새로이 개발된 과학적인 지식을 배우도록 해야한다. 이런 연수 교육은 주 교육부 또는 연방 질병통제국으로부터 연수 교육을 받았거나 전문 지식을 보여준 직원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4. 교육구는 HIV/에이즈 연수 교육을 확장할 수 있고, 종합 성 보건 교육을 제공하는 직원을 포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성 건강에 대해 새로이 개발된 과학적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교육구는 종합 성교육 또는 HIV/에이즈-예방 교육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복수 언어 교과과정을 개발한 외부 자문관 또는 교육구 직원에게 교육 또는 트레이닝을 전달하기 위해 장애자들에게 적합한 교과과정을 개발한 외부 전문가를 계약 채용할 수 있다.

학부모/보호자 연례 콘돔 제공 프로그램 관련 통지서

HIV/AIDS와 성병은 우리 커뮤니티에 널리 퍼져 있는 질병이다. 공공 보건 통계 자료 및 보고에 의하면 점점 더 많은 수의 우리 십대 청소년들이 이런 질병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활동에 개입하고 있다. 본 교육구는 이런 질병 예방을 백퍼센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행위 금욕을 강조하고 있지만, 본 교육구는 모든 학생이 다 금욕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현실도 인식하며, 따라서 HIV/에이즈 바이러스 성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올바른 콘돔 사용을 가르쳐야 한다고 인식한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면서, 의료 및 공공 보건당국과 공조하여, 교육위원회는 1992년에 부모가 허락 거절을 학교에 서면으로 연락하지 않는 한, 학생에게 콘돔을 제공할 수 있는 방침을 제정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공 보건국은 부모나 보호자인 귀하가 콘돔 제공 거절 내용을 학교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는 한, 학생에게 무료로 콘돔을 제공할 것이다. 콘돔 제공과 관련하여 본 교육구는 어떠한 책임도 수용하지 않는다.

자녀가 학교 콘돔 제공 프로그램(Condom Availability Program)으로부터 콘돔을 제공받을 수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학교에 서면으로 제출하시오.

균일 고소 절차

교육구가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주법, 연방법 및 규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할 책임이 우선적으로 있다는 것을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인식한다. 교육구는 관할 지역에서 고소 내용을 조사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교육구는 불법 차별 또는 다음 관련 법규 불이행을 처리함에 있어서 균일 고소 절차를 준수하며, 성인 교육, 커리어 기술 교육, 아동 발달 통합 프로그램, 인디언 교육, 이주자 교육, 급식 서비스, 특수 교육 관련 법규 그리고 주(state)의 재정 보조로부터 자금을 지급 받거나 그로부터 혜택을 받는 관할 기관이 실시하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있어서, 개인의 실질적 또는 인지된 성, 성적 성향, 성별, 민족 유형 식별, 인종, 조상, 국적, 종교, 피부색, 정신 또는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그리고 이런 실질적 또는 인지된 특성 중 하나 이상을 지닌 사람이나 집단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이유를 근거로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한다. 고소장 제출 관련 질문, 추가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교육적 균등 준수 부서(the Educational Equity Compliance Office)에 (213) 241-7682으로 연락하시오.

준수 국장

교육구는 교육적 균등 준수 부서에 교육구 준수 국장을 임명하여, 고소 사항을 접수, 조사를 지도하며 고소 및 차후 관련 소송과 관련된 기록을 보관하여, 교육구가 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통지

교육구는 학생, 직원, 학부모 및 보호자, 학교 자문 위원회, 해당 사립 학교 임원이나 담당인, 그리고 기타 본 절차에 이익 당사자와 고소 처리에 책임있는 사람들에게 매년 서면으로 통지할 것이다. 고소인에게 이로서 가능한 민법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리고 정지처분, 접근 금지령 또는 기타 처분이나 법정 명령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고소장 접수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방법 또는 주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고소장은 반드시 교육적 균등 준수 부서에 교육구 준수국으로 접수시켜야 한다. 고소장 내용이 본 방침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인 경우, 고소인은 조언을 받는다.

자신이 불법 차별을 개인적으로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 개인 또는 특정 개인 집단이 불법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불법 차별을 주장하는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 주장하는 차별이 발생한 날짜 또는 고소인이 차별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장을 반드시 접수해야 하며, 다만 고소 당사자가 연장 사유를 설명한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면 접수 기간은 교육구 총교육감이나 대리인에 의해 연장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교육구 교육감이나 대리인에 의한 연장은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접수기간은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교육구 교육감이나 대리인에 의해 연장될 수 있으며, 이는 6개월 기간이 지난 후 구십(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교육구 교육감은 연장 요청서 수령 즉시 응답한다. 문맹 또는 기타 장애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고소인인이 서면으로 고소장을 작성할 수 경우, 교육구는 고소장 접수시 도움을 제공한다. 균일 고소 절차서는 요청시 받을 수 있다.

고소 내용 조사

준수 국장/담당인의 재량하에서 그리고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교육구 준수 국장/담당인은 중재를 통하여 시비의 해결책을 구할 수 있다. 본 절차는 선택 사항이다. 담당 준수 국장/담당인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필요한 경우 조사 회의를 소집한다. 고소인 그리고/또는 대변인 및 교육구 대표는 관련 정보를 제시할 수 있다. 관련된 모든 사실이 제시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준수 국장/담당인 그리고/또는 고소인은 기타 개인이 본 회의에 참여하여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고소 조사 과정에 참여한다 하여 행해질 수 있는 보복 행위로부터 고소인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교육구가 해당인의 사생활 및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고소 조사를 위하여 특정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할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고소인에게 알린다. 고소장을 접수함으로써, 고소인은 교육구에 조사를 위임하며, 고소 내용을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만큼 공개하는 것을 위임한다.

서면 결정서

고소장을 접수한 후 육십(60)일 이내에, 담당 준수 국장/담당인은 교육구의 조사, 고소 내용의 발견 사항 및 정정 조치(들)(해당되는 경우), 제의된 해결책(들), 이런 발견 사항에 대한 논리, 모든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보낸다. 교육구 결정

에 대한 보고서는 영어로 작성될 것이며 가능할 경우는 언제든지 또는 법이 정하는 경우 고소인의 모국어로 작성한다.

해당 기관에 의뢰하는 고소 사안

캘리포니아 규제법 제 4611조 타이틀 에 의거하여, 다음의 고소장은 해당 기관에 의뢰되어 적절한 해5결책을 구하게 되며, 본 고소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의심되는 아동 학대 주장: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아동 및 가족 서비스 부서, 3075 West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그리고/또는 관할 법 집행 기관의 아동 학대 부서

아동 발달 프로그램에 관련된 보건 및 안전: 캘리포니아 주 소셜 서비스 부서, 커뮤니티 케어 및 허가증 부서 (California State Department of Social Service, Community Care and Licensing, 6167 Bristol Parkway, Room 400, Culver City, CA 90230

아동 영양 프로그램이 개입된 차별 사항: 미 농무부, 식품 및 영양 서비스, 아동 영양 부서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and Nutrition Service, Child Nutrition Division) 3101 Park Center Drive, Alexandria, VA 22302

고용 차별 고소 내용: 공정 고용 및 주택 부서(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DEFH), 611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캘리포니아 교육부로 제기하는 항소

고소인이 교육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교육구의 결정서를 받은 후 십오(15)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교육부로 항소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접수시킬 수 있다. 항소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본인은 교육구로부터 받은 결정서와 해당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해당 법규가 잘못 적용된 내용을 서명한 사본뿐 아니라 고소장 원본 사본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항소서는 다음 주소로 보내시오:

윌리엄스/벨렌주엘라 균일 고소 절차

윌리엄스/벨렌주엘라 균일 고소 절차, 교육법 제 35186(f)은 다음과 관련된 부모 및 보호자의 소송 권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1. 모든 학교는 반드시 충분한 교과서와 학습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영어 학습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은 교과서 또는 학습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또는 교과서와 학습자료 모두, 그리하여 수업 시간에 사용하고 그리고 집으로 가지고 가거나 방과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학교 시설물은 청결, 안전하고 양호한 수리 상태를 유지해야만 한다.
3. 각 클래스에 일련의 대리교사나 임시교사가 아니라 한명의 정식 교사를 재정해야 한다. 해당 교사는 적절한 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있고 해당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트레이닝을 받아야 하며, 영어 학습생이 해당 클래스에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은 교사이어야 한다.
4. 12학년말까지 고교 졸업시험(CAHSEE)을 통과치 못한 학생에게 교육법 제 37254 (d)(4) 그리고 12학년을

이수한 후 (5)에 의거하여 집중적인 학습지도와 서비스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위의 문제에 대한 고소장 접수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을 통해 받을 수 있다:

- 학교 메인 오피스
- www.lausd.net
- 또는 (213) 241-2597로 전화한다.

문제 해결 및 응답 해당 기간을 맞추기 위해, 모든 고소장은 다음 한 곳에 접수시켜야 한다:

- 학교 현장(메인 오피스, 교장 등)
- (213) 241-6947로 팩스 보낸다
- williams-valenzuela@lausd.net로 이메일보낸다
- 또는 다음 주소로 학교 우편을 통해 보낸다:
LAUSD
Office of the COO
Williams/Valenzuela Legislation Office
333 South Beaudry, Ave., 24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윌리엄스/벨렌주엘라 UCP 관련 질문은 최고 운영인 부서, 윌리엄스 입법 부(the Office of the Chief Operation Officer, Williams/Valenzuela Legislation Office)에 (213) 241-2597 로 직접 연락한다.

석면 관리 계획

교육구에 속한 각 학교에는 "AHERA"(석면 위험 긴급 대처법) 보고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석면이 존재하는 장소 및 해당 장소의 상태가 적혀져 있다. AHERA 보고서는 6 개월마다 한차례씩 최근의 정보로 교체되고, 요청시 검토용으로 제공된다.

해충 종합관리 프로그램

1999년 3월, 교육위는 제초 기술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살충제와 제초제를 사용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궁극적으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목적으로 작성한 수정된 살충제 종합 관리(IPM) 방침을 승인했다. 인체, 환경, 재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해충 문제를 가장 안전하고 위험 부담이 적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교육구의 목적이다. 아래에 설명된 IPM 방침은 장기적인 예방에 주력하며 적절한 살충법을 선택할 때 비-화학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본 프로그램은 살충제나 제초제를 사용하기 전에 기계적인 살충법(예: glue traps), 축출 살충법(문에 방충방 설치, 구멍이나 틈을 메운다)을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공공 보건 공직자, 의사, 두명의 부모, 기타 일반인, 총 15명 회원으로 구성된 해충관리팀(Pest Management Team)과 교육구 직원은 본 방침의 시행을 책임지고 있으며, 위험률이 적은 살충제와 제초제를 승인하는 일도 이에 포함된다. 살충제품은 IPM가 살충제의 함유물, 사용 유의사항, 위험률이 적은 살충법들을 세밀히 검토한 후에 이에 대한 제품 승인을 먼저 받아야만 한다. 살충제와 제초제는 교육구의 자격증 소지 해충 관리 기술자에 의해서만 다루어질 수 있다. 교직원, 일반계약자, 학생, 부모는 살충제/제초제를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

살충제가 사용될 경우 교육구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통해 부모, 교육구 고용인, 학생들에게 통지할 것이다.

1. 본 안내서에 포함된 IPM 프로그램 및 목표 요약서, IPM 방침서, 통지 요청서, IPM이 현재 승인한 제품
2. 다음을 학교 사무실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 IPM 팀이 승인한 제품 목록
 - 해당 학교에서 IPM의 활동을 적은 기록.
 - 살충제를 사용하는 경우, 부모나 보호자가 이를 72 시간내에 통지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에 서명하는 용지 (IPM 조정인, 독립 IPM 전문인이 긴급상황이라고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

통지서에는 다음의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된다: 제품명, 활성요소, 제거 대상 해충, 살충제 사용일자, 살충제의 독성을 나타내는 기호, 추가정보를 제공할 수는 연락처와 전화번호, 학교 사무실에서 추가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는 내용.

자녀가 살충제에 노출되면 자녀의 건강 그리고/또는 행동에 지장을 주거나 살충제가 뿌려질 때마다 통지받기를 원하는 부모나 보호자들은 이를 교장에게 알려야 한다.

IPM 팀이 승인하지 않은 살충제를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인을 최소 72시간내 그리고 해당 살충제의 효능이 지속되는 시간 절반의 5배되는 시간내에 눈에 잘 띄는 주변에 붙여 놓는다.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긴급상황인 경우, 살충제를 뿌림과 동시에 이에 대한 사인도 붙인다. IPM 프로그램 및 방침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부모나 보호자는 교육구 관리 및 운영부에 (213) 241-0352로 연락하십시오. 해당 정보는 www.laschools.org의 "Links"에 들어가면 받을 수 있다. IPM의 학부모 대표 자리가 공석일 경우, IPM 위원에 관심있는 학부모나 보호자들은 위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이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한다.

방침 성명서: 해충 종합관리(IPM)에 대한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의 방침이다. 본 프로그램의 전체 내용은 연방법, 주법, 규제법과 카운티 조례를 의거한 것이다. 모든 교육구의 방침은 본 IPM 방침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살충제는 인체 건강과 환경에 위험하며 특히 아동들에게 더 위험하다. 살충제는 인체에 나쁜 영향 즉 암, 신경 손상, 기형아, 유전자 변경, 생식기관 관련 유해, 면역기관 장애, 내분비선 파괴, 독극성의 원인이 된다.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양호한 교육환경과 학교 건물과 부지를 잘 관리하기 위해 해충은 규제될 것이다. 살충제는 외관상의 미적인 면만을 위한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학생, 교직원 및 환경의 안전과 건강을 더 우선으로 둘 것이다.

추가로, 인체, 환경 및 재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가장 안전하고 위험 부담이 적은 살충법으로 해충을 규제하는 것이 교육구의 목표이다. 교육구 IPM 방침은 장기적인 예방에 주력하며 적절한 살충법을 선택할 때 비-화학적인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교육구는 모든 화학 살충법을 궁극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예방 원칙”이 교육구의 장기적인 목표이다. 원칙상,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거나 위험하지 않은 살충제는 없다, 그리고 살충제 제조사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게 자사 제품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것을 입증시키기 보다는 자사 제품이 상기에 나열한 위험요소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현시점에서 예방원칙을 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향후 수십년간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본 방침은 인정한다. 그러나 교육구는 이런 것을 가능케하는 검증된 과학자료가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을 약속한다.

LAUSD 시스템 통지: “CONNECT-ED”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Connect-ED** 불리는 교육구 전역 통지 시스템을 통해 비상 상태, 출결석, 학교 행사 및 귀하와 귀하 자녀에 관련된 중요 사항을 부모 및 교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Connect-ED 서비스를 통해 개별적 음성 메시지를 귀하의 가정, 직장 또는 휴대폰으로 보내고 또는 이메일을 통해 귀하게 연락할 수 있다. **Connect-ED**를 통해 몇분내에 교육구 소속 모든 사람에게 연락이 가능하며 이로서 학교와 학부모 및 교직원 사이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귀하의 현재 연락 정보를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 통지, 출결석 및 비상시 의사소통을 어디서 받기를 원하는지는 귀하가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Connect-ED의 용도로 어떤 번호를 제공하는 것이 좋은가?

학교 연락을 세 번 시도할 것이다.

- **일반** 통지는 초저녁에 보내지며, 비-긴급성으로서 앞으로 있을 행사나 공고 내용들이다.
- **출결석** 통지는 학교 시간과 초저녁 사이이 보내지며 가장 적절한 번호인 낮 시간동안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사용한다. 직장에 다니시는 부모들은 직장 전화번호나 휴대폰 전화번호가 이에 해당된다. 낮시간에 집에 있는 부모인 경우, 집 전화번호가 해당된다. 낮시간 동안에 집에 아무도 없는 경우, 출결석 통지 번호로 집 전화번호를 추천하지 않는다.
- **비상 상황** 통지 메시지는 긴급을 요하는 내용이며 하루 중 어느 때라도 보내질 수 있다. 이런 목적으로 부모가 제공해야 하는 전화번호는 취침 이외 시간에 가장 잘 연락될 수 있는 번호이어야 한다. **Connect-ED**는 일반 및 출결석 통지를 포함한 저장된 모든 전화번호로 부모에게 연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번호는 부모나 보호자의 번호이어야 하며 이머전시 카드에 적힌 대체 연락번호이지 않아야 한다. 학교가 부모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 이머전시 카드에 있는 정보를 사용할 것이다.

메시지의 종류에 따라 어떤 번호로 연락받기를 원하는 지를 첨부서에 기재하십시오. **Connect-ED** 서비스는 교환번호로는

연락이 취해지지 않기 때문에 직접 연결되는 번호여야 함을
유념하십시오.

중요 전화 전달 조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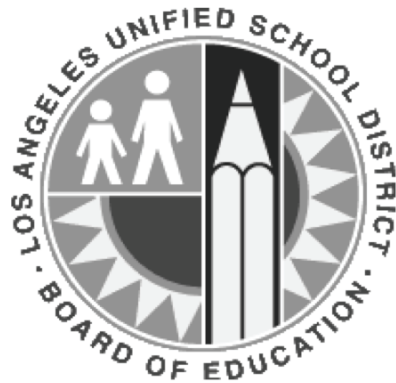
1. 학교(또는 교육구)가 전화 연락을 취할 때, 메시지를 받는 사람의 콜러 ID는 학교 (또는 교육구) 명칭 또는 전화번호를 표시할 것이다.
2. 메시지를 듣고 있는 중, 주변 잡음은 이 시스템을 “중지 및 시작”을 초래시킬 수 있다. **Connect-ED**는 사람이나 자동응답기/음성 메시지에 연락이 닿았는 지 그리고, 주변 잡음이 메시지 전달에 지장을 주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매우 세밀히 접속되어 있다. 가급적 조용한 곳으로 가서 받거나, 귀하 전화의 “mute” 버튼을 누르시오.
3. 메시지의 일부를 놓쳤을 경우, 전화를 끊지 않은 상태에 전화기의 “*” (스타) 키를 누르면 전체 메시지를 다시 들을 수 있다.

가급적 신속히 자녀편으로 첨부된 서식을 보내주시오.

학교가 귀하의 현 연락번호를 갖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야 귀하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모든 개인 정보는 철저히 기밀로 유지될 것이며, 교육구 시큐리티 방침을 준수할 것이다.

조만간 귀하와 연결이 되기를 고대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LAUSD)의 교사, 행정관 및
직원은, 모든 학생들의 가치와 존엄은 동등하다는 것을
믿으며, 모든 학생이 최대 잠재력에 도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서식
및
첨부서가
포함됨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2008-2009 학부모 학생 안내서 학부모/학생 인정서

친애하는 학부모/보호자께:

교육법 48980 (a) 항에 의하면, 교육 위원회는 해당 교육구/학교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를 통지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는 학부모 권리에 대한 정보를 받았음을 인정하는 의미로, 통지서에 반드시 서명하여 자녀의 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신규 학부모-학생 안내서를 읽으시고 서명한 아래 부분을 학교에 보내주십시오. 귀하의 서명은 특정 프로그램 참여를 동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취선-----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연례 학부모-학생 안내서 통지서 수령증 2008-2009 학년도

본인은 아래 본인의 서명에 의해, 본인의 아들/딸을 대신하여 학부모/학생 권리에 대한 연례 통지서를 수령했음을 인정합니다.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과 학년을 정자로 기입하십시오.

학생 성명:

성	이름	M.I.	생년월일	학년
---	----	------	------	----

학부모/보호자 서명

학생 서명 (6-12 학년)





안내용 정보 공개 서식서 2008-2009



연방법 및 주법에 하에, 교육구는 허락된 특정 개인, 기관 그리고/또는 직원에게 학생 안내용 정보를 식별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49073에 의거하여, LAUSD는 위에 명시된 직원 및 기관에 공개될 수 있는 안내용 정보로서 다음의 유형의 정보를 식별했습니다. 17세 이하 자녀의 부모 및 18세 이상의 성인 학생은 안내용 정보의 일부 또는 전체를 공개하지 말라고 학교 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학생 안내용 정보 비공개 요청은 이번 학년도에만 적용됩니다.

아래에 제시된 안내용 정보 공개 서식서를 읽고 작성한 다음, 학교 교장에게 돌려보내 주십시오. 본 서식서를 보내지 않는 한, 학생의 정보는 아래와 같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절취선-----

안내용 정보 공개 서식서 2008-2009

TO: _____ 날짜: _____

학교명

학생 성명: (정자로 쓰시오)	생년월일:	학년:
주소:	시:	우편번호:
전화번호:	기록 보관실:	

학생 안내용 정보

- ☐ 1. 본인은 어떠한 안내용 정보도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에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는

- ☐ 2. 본인은 아래 글상자 I에 표시한 내용에 따라 안내용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공개하지 않음
보건국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	
정신건강국	
보호감찰국	
PTA	
Elected Officials	

	공개하지 않음
1. 성명	
2. 주소	
3. 전화번호	
4. 생년월일	
5. 출결석 날짜	
6. 이전에 다녔던 학교(들)	

- ☐ 3. **11 학년과 12 학년생에게만 해당됨:** 본인은 아래 글상자 I에 표시한 기관에 위에 명시된 학생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가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_____ 미합중국 군대 _____ (군인) 모병 기관	_____ 칼리지, 대학 또는 기타 _____ 고등교육 기관
-----------------------------------	--------------------------------------

언론 공개 정보

- ☐ 언론계 종사자들은 본인의 자녀를 상대로 인터뷰, 사진 촬영 또는 영화 촬영할 수 없습니다.
- ☐ 언론계 종사자들은 본인의 자녀를 상대로 인터뷰, 사진 촬영 또는 영화 촬영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보호자 서명(학생이 18세 미만인 경우)

학생 서명(학생이 18세 이상인 경우)



LAUSD 통지 시스템 연락 정보

학교명: _____

학생: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자녀의 성명을 기재하십시오.

학생의 성명 (성, 중간 이름, 이름)		생년월일	학년	트랙

학부모/보호자 정보 관련 지시사항: 학부모/보호자 정보를 작성하고, **Connect-ED** 통지 시스템을 통해 귀하게 연락을 취할 때 메시지의 종류(첫번째 칸에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원하는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십시오. 모든 전화번호는 반드시 직접 다이얼이 되는 번호이어야 합니다(교환번호는 안됨). 동일한 번호로 여러 연락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 정보	아버지의 (법적 보호자의) 성명 (성, 중간 이름, 이름):	어머니의 (법적 보호자의) 성명 (성, 중간 이름, 이름):
	아버지의 (법적 보호자의) 주소:	어머니의 (법적 보호자의) 주소: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다른 언어인 경우):

메시지 종류	아버지의 (또는 법적 보호자의) 정보	어머니의 (또는 법적 보호자의) 정보	전화번호의 종류를 명시하십시오(집, 직장, 휴대폰)
일반 통지 (학교 행사 및 비-비상 사태 관련 메시지)	* () - ☐ 위와 동일함	* () - ☐ 위와 동일함	☐ 집 ☐ 직장 ☐ 휴대폰
출결석 통지 (지각 및 결석 통지로서 낮시간에 연락을 취함)	() - ☐ 위와 동일함	() - ☐ 위와 동일함	☐ 집 ☐ 직장 ☐ 휴대폰
비상시 연락 통지 (학교 폐쇄, 퇴거, 기후 또는 자연 재난 관련 비상 사태 통지)	☐ 위와 동일함 () -	☐ 위와 동일함 () -	☐ 집 ☐ 직장 ☐ 휴대폰

* 자녀가 학년도 동안 두개의 다른 집에서 거주하지 않는 한, 전화번호는 하나만을 기재하십시오.

이메일 주소	@	@
(Connect-ED를 통해 학교 관련 메시지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받고 싶다면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십시오.)		
특수 필요: 귀하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할 때 특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표시하십시오 (예, 청각 장애 부모/보호자의 경우 특수 TTY 기구 이용).		



Approved Pesticide Product List

실용제 제품명	(1) 유효성 성분	외형 특성	사용 방법	목표물 해충 종류	USEPA 독성 유형	(2) 레벨 주의 경고	주의사항	EPA REG. NO.
Advance Granular Ant Bait	아바멕틴 B1 0.011%	알갱이(미립자)	실내외에서 음식 유연제로 사용되는 미립자	개미	3	주의		499-370
Ascend Fire Ant Bait (Formula 1)	아바멕틴 B1 0.05%	고체	실내외 미립자 미끼	불개미, 파라오 개미, 개미류	3	주의		499-370
Avert Cockroach Bait Stations	아바멕틴 B1 0.05%	원반 미끼	자체 미끼통	바퀴벌레	3	주의		499-467
Avert Cockroach Gel Bait (Formula 3)	아바멕틴 B1 0.05%	젤(포물라 3)	틈과 구멍에 미끼로 사용될 썰	바퀴벌레	3	주의	미끼 유인제	499-410
Avert Crack & Crevice Bait (Dust)	아바멕틴 B1 0.05%	분말	분말 미끼	바퀴벌레	3	주의	미끼 유인제	499-294
Avitrol Whole Corn	4-아미노피라디딘 0.5%	알갱이 미끼	알이 벌어진 옥수수와 섞어 비둘기를 분산시키는 데 사용한다	비둘기	3	주의	사용 제한. 교사 및 학생들이 부근에 있을 때에만 사용한다	11649-7
Bora-Care Termiticide, Insecticide and Fungicide Concentrate	disodium octaborate tetrahydrate 40%	액체 현탁	해충으로 감염된 나무에 분무기로 뿌린다	터마이트	3	주의		64405-1
Contrac Blox	브로모디알론 0.005%	덩어리 미끼	땅굴쥐 미끼	땅굴쥐	3	주의	이따금 미끼통에 사용한다.	12455-79
Demize EC	리날룰 37%, 파이프롤닐 부트오시드 40%	액체	분무기 사용	벼룩	1	위험 경고	사용할 때마다 페스트 슈퍼바이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무인 시설에만 사용. 다음 회의에서 IPM 팀에게 통고한다.	4758-181-57076
Distance IGR	피리프로시펜 0.5%	알갱이	부분적 또는 인근 부근을 전 부 뿌린다	불개미	3	주의	해당 계절에만 사용	1021-1728-59639
Drax Liquidator Ant Bait	붕산 1.0%	액체	미끼를 서식 장소에만 사용	개미	3	주의	옥외에서만 사용	944-206
Drax Ant Kil Gel	붕산 5%	젤	당판을 입힌 실내 미끼	개미	3	주의		9444-131

Approved Pesticide Product List

Embarck 2S, Plant Growth Regulator	메프루이드 디에타놀라민염 28%	액체	분무기로 과실수에 골고루 뿌려 성장을 조정	과실수 꽃	3	주의	계절에 따라서만 사용	2217-759
Gas Cartridge (for Burrowing Rodents)	질산염 53%, 목탄 28%	카트리지	퓨즈에 불을 당겨서 굴속으로 던진다	다람쥐	2	경고	일산화탄소를 방출한다	56228-2
Generation Mini-Block	디페타이론 0.0025%	고체	미끼를 서식장소에만 사용	땅굴쥐	3	주의	견고한 미끼통을 사용함	7173-218
Gentrol IGR Concentrate	하이드로프렌 9%	액체	트랩과 구멍에 분무기로 뿌린다	바퀴벌레, 벼룩, 지장실 해충	2	경고	시식물에만 사용. 해충 성장 조정	2724-351-50809
Gentrol Point Source	하이드로프렌 90.65	엠폴	엠폴을 깨서 공중으로 자연스럽게 퍼트린다	바퀴벌레, 벼룩, 지장실 해충	3	주의	학생이 있어도 없어도 사용하지 못함	2724-469
Jecta	Disodium Octaborate Tetrahydrate-40%	젤	구멍을 뚫고 나무 속에 투입 후 구멍을 메운다	터마이트, 곰팡이	3	주의		64405-4
M-Pede	지방산 포타슘염 49%	액체	분무기로 해충에게 직접 뿌린다	아프리카나 꿀벌, 산주벌레, 농작물 해충	2	경고		53219-6
Niban Granular Bait and Niban-FG	붕산-5%	미립자, 미세한 미립자	실내외 미끼	여러 종류의 해충	3	주의		64405-2
NiBor-D	Disodium Octaborate Tetrahydrate-98%	분말	건조하거나 젖은 상태로 사용	여러 종류의 해충	3	주의		64405-8
Nylar IGR	2-(1-메틸 2-(4 페노크시페닐) 에타크실 피리딘 1.3%	액체	분무기로 뿌린다	벼룩, 바퀴벌레	3	주의	사람이 없을 때 실외에서만 사용	11715-307-57076
PT Wasp Freeze (515)	페노트린 0.12%, d-트랜스 말레트린 0.129%	에리솔	실외용 분무기로 직접 말벌과 벌에 뿌린다	말벌, 벌	3	주의	매번, 사용하기 전 슈퍼바이저로부터 승인을 받음	499-362
PT 565 Plus XLO Formula 2	피레트린-0.5% 피페로닐 볼록시드-1% 엔-옥틸 비사이클로헥시딘 디카르복실산 1%	에리솔	설명서 대로 사용한다	벼룩, 진딧물, 모기, 벌, 진드기	3	주의	사용 후 24시간 동안 그곳에 출입을 금함. 본 제품 사용시 음식 관리에 주의를 요함	499-290
Rozol Pocket Gopher Bait	Chlorphacinone.....0.005%	알갱이 미끼	뒤쥐 굴에서만 사용	뒤쥐	3	주의	학생들이 근처에 없을 때 운동장과 정원에서만 사용한다.	7123-184
Suspend SC	델타메트린 4.75%	액체	분무기로 뿌린다	벼룩, 티크, 불개미	3	주의	벼룩, 티크, 불개미 처리제로 실외용으로만 사용. 사용 후 24시간 동안 출입 금함	432-763
Tim-Bor Professional	붕산염 98%	분말	건조하거나 젖은 상태로 사용	나무 파괴 생물체 및 곰팡이	3	주의		64405-8

Approved Pesticide Product List

Victor Poison Free Wasp & Hornet Killer (No. 604)	민트 오일 8%, 라오릴 황산 나트륨 1%	에러솔	분무기로 뿌린다	말벌, 호넷, 벌	N/A	해당 없음	FIFRA 하에 면제	52142-MO-2
Wilco Ground Squirrel Bait	2-Phenethyl propionate 4.5% Euginol (clove oil) 1.75%	알갱이 미끼	구멍 안에 넣거나 서식장소에 사용한다	땅굴쥐	3	주의	곤 바가 올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음. 매번 사용할 때 수퍼바이지 로부터 승인을 받음	CA Reg. No. 36029 -50004-AA
ProFoam Platinum	황산염 인산수소 Disodium Lauroampho Diacetate-60%	거품	거품 제품, 비-살충제	다양하게 사용	3	주의		CA Reg. No. 1051148-50001-AA
Summit Bti Briquets	Bacillus thuringiensis subspecies israelensis solids, spores and insecticidal toxins-10.31%	고체 덩어리	물 위에 떠있는 유충	모기 유충	3	주의		6218-47
Mosquito Larvicide GB 1111	Aliphatic Petroleum Hydrocarbons- 98.7%	액체	수면에 사용한다	모기 유충	3	주의	본 제품은 사용시, 사용 지역에차단용 테이프를 치서 경고 사인을 붙이도록 한다. 본 제품을 사용한 모든 경우를 IPM 다음 회의에 보고한다. 인벤토리 관리 방법이 사용된다.	8329-72
Altosid Briquets	S-Methoprene- 8.62%	덩어리	물 위에 떠있는 유충	모기 유충	3	주의	본 제품은 물이 흘르는 지역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곳 즉 폭풍 배관이나 저장 용당이에 는 사용하지 않는다.	2724-375
EcoExempt D	2-Phenethyl propionate 4.5% Euginol (clove oil) 1.75%	분말	손으로 배포한다	꿀벌 및 쏘는 해충	면제된 재료	면제된 재료	꿀벌과 기타 쏘는 해충-빈 공간이나 밀폐 지역에 사용. 사람이 있는 곳에는 사용하지 못함. 본 제품 사용은 제한적임. 사용법 관련 인쇄물을 참고한다	FIFRA 하에 면제될
Recruit IV AG (Sentricon)	Noviflumuron 0.5%	고체	미끼를 서식 장소에만 사용	지하 서식 터마이트	3	주의		62719-454
Recruit IV (Sentricon)	Noviflumuron 0.5%	고체	미끼를 서식 장소에만 사용	지하 서식 터마이트	3	주의		62719-453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연례 살충제 사용 통지서



본 교육구는 통합 해충 관리 방침을 채택했습니다. 본 방침에는 살충제 사용시, 이를 부모/보호자와 교육구 직원에게 통지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년도 동안, 해충에 의한 심각한 질병 그리고/또는 건물 구조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살충제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충제에 노출될 경우 자녀나 본인(학교 직원) 건강 그리고/또는 행동이 지장있는 경우, 다음을 통지합니다:

- 승인 목록에 속한 살충제는 해당 학년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교육구 산하 모든 장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살충제 목록이 첨부되어 있음으로 이를 참고하십시오).
- 비승인 제품을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 72시간 전에 통지합니다(예외: 비상시에는 즉각적인 응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교육구 승인 목록을 포함한 살충제 관련 추가 정보는 <http://www.cdpr.ca.gov>를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살충제가 사용될 때마다 사전에 통지받기를 원한다면, 아래 부분을 작성한 후 절취선 부분을 잘라서 학교 메인 오피스로 보내주십시오.

-----절취선-----

통지 요청서

학생/직원 성명: _____

학교/장소: _____

룸 번호 또는 홀룸 번호: _____

- ☐ 본인은 학교에서 살충제를 사용할 때마다 사전에 통지받기를 원합니다(예: 연례 살충제 사용 통지서에 추가로). 본인은 살충제 사용 전 적어도 72시간 전에, 해당 통지서가 자녀편으로 집으로 보내지거나 교직원인 본인에게 제공됨을 이해합니다.
- ☐ 본인은 학교에서 살충제를 사용할 때마다 통지받을 필요 없습니다. 본인은 학부모-학생 안내서를 통해 연례 통지서를 받을 것이고 또는 다른 방법으로(교직원) 학교 사용으로 승인을 받은 살충제를 통지받을 것임을 이해합니다.

서명: _____

날짜: _____

현장 행정관에게 알림

메인오피스에 원보를 보관하십시오. “사전 통지를 받고 싶다”에 표시된 경우,
학교 우편으로 사본을 보내시오.:

Pest Management Department
Central Shops
Attn: Adrian Saldiv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
아동 건강 엑세스 및 메디칼-프로그램 (CHAMP)
2008-2009 의료 보험 비교표**

의료 혜택	메디칼	헬시 패밀리즈	헬시 키즈	카이저 퍼맨넬드 아동 의료 플랜
수혜 자격	0-21세 아동	0-19세 아동	0-19세 아동	0-19세 아동
월 보험료	월 보험료 없음	\$4-\$15(아동, 최고 \$45/가족당 최고 \$180/아동 한명당/일년	\$0-\$6(아동, 최고 \$12/가족당 최고 \$144/아동 한명당/일년	\$8 또는 \$15(아동, 최고 \$45/가족당 최고 \$430/아동/일년 (아동 일인당 매년 공동 분담비 \$250)
최대 연례 보험료:	0-1세 아동: 200% FPL까지 1-6세 아동: 133% FPL까지 6-19세 아동: 100 % FPL까지 위의 소득 %보다 높은 경우 비용 분담이 적용됨. 비용 분담(Share of Cost)은 디덕터블과 유사하다. 메디칼 사용을 원할 경우 가족 의료 보험료로 일정액을 부담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년에 3명 이상의 아동이 있는 한 가족당 최고 \$790 (일년에 한 가족당 공동 분담비 최고 \$250 포함)	일년에 3명 이상의 아동이 있는 한 가족당 최고 \$394 (일년에 한 가족당 공동 분담비 최고 \$250 포함)	일년에 3명 이상의 아동이 있는 한 가족당 최고 \$1040 (일년에 한 가족당 공동 분담비 최고 \$500 포함)
한 가족당 아동 3명				
메디칼 오피스 서비스/전문 의	100% 적용	매번 \$5	매번 \$5	매번 \$5
예방 치료	100% 적용	무료	무료	무료
입원	100% 적용	무료-100% 적용	무료-100% 적용	무료-100% 적용
긴급 치료	100 % 적용	매번 \$5 - 100% 적용	매번 \$5 - 100% 적용 (입원 시 면제)	매번 \$5 - 100% 적용
응급실	100 % 적용	매번 \$5 - 100% 적용 입원 시, 무료	매번 \$5 - 100% 적용	매번 \$35- 100% 적용
정신 건강	의료 플랜 그리고/또는 카운티를 통해 100% 해당	입원 환자 무료: 외래 환자 매번 \$5.	입원 환자 무료: 외래 환자 매번 \$5.	\$5 개인당/\$2 그룹 매번
치방약	100 % 적용	치방서 당 \$5	치방서 당 \$5	치방서 당 \$5 \$20 유영 약 (복용약 100까지 사용)
치과	무료(예방 치료, 충치, 치아 보호 봉합제, 진단 서비스)	무료(예방 치료, 충치, 치아 보호 봉합제, 진단 서비스): \$5 (중대 진료)	무료(예방 치료, 충치, 치아 보호 봉합제, 진단 서비스): \$5 (중대 진료)	델타 덴탈에서 제공 무료 (기본 검진 \$5-\$25방문당 (충치 치료 & 중대 치료)
시력	2년 마다 검진 및 안경 100% 적용	12개월당 1회 \$5(검진; \$5안경, 테 또는 렌즈	12개월당 1회 \$5(검진; 안경테 허용액\$75, 콘택 렌즈\$110(검진, 조절, 재료)	12개월당 1회 \$5(검진; 2년마다 안경/콘택 렌즈 허용액 \$125

* 변경될 있음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학생 보건 및 인적 자원 서비스
커뮤니티 파트너십 및 메디칼 프로그램
333 S. Beaudry Avenue, 18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David Brewer III
총 교육감

Donnalyn Jaque-Anton
상임 위원, 교육 서비스

Rene Gonzalez
교육감 보

John Di Cecco
국장,
커뮤니티 파트너십 및 메디칼 프로그램

사생활 보호 업무 수행 통지서

본 통지서는 자녀에 대한 의료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공개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귀하가 이런 정보를 어떻게 접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십시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LAUSD) 및 관련 계약 기관/학교들은 연방 법규에 의거하여, 의료 보험 이동성 및 책임성 법규(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HIPAA)를 준수하여 귀하의 보호된 건강 정보(Protected Health Information-PHI)를 기밀에 부쳐야 합니다. PHI에는 교육구가 자녀의 신원이 식별될 수도 있는 자녀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건강/의료 상태를 처음으로 작성했거나 취득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귀하의 서면 위임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구는 법에 의해 요구되거나 허용된 경우에만 치료, 비용 지불, 의료 케어 운영등의 건강/의료 정보를 공개할 것입니다. 사용되는 모든 경우를 열거하지 않았지만, 다음 설명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구는 이런 정보를 사용 및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시간 약속 재확인 및 건강-관련 혜택 또는 서비스:** 귀하에 시간 약속 재확인을 보내드리기 위해 PHI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기타 건강 케어 관련 치료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귀하에게 드리기 위해서도 PH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치료:** 귀하에게 의료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 또는 의사, 간호사 및 기타 의료 케어 전문인과 같이 자녀의 케어에 개입된 사람들에게 귀하의 PHI를 사용 및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재학중 필요한 적절한 특수 교육을 추천할 목적으로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을 위해 PHI를 관련 교직원과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자녀에게 제공된 치료 비용을 받기 위해:** 자녀가 학교 또는 커뮤니티에서 받은 치료 및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고 청구비를 지급받기 위해 귀하의 PHI를 사용 및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LAUSD는 메디칼 수혜 유자격 학생들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메디케이터에 청구합니다.
- 건강 케어 운영:** 교육구는 학교에서 운영되는 보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귀하의 PHI를 사용 및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구의 질적 개선 멤버는 질적 개선 목적을 위해 케어 및 그 결과를 상의하기 위해 자녀의 건강 기록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교육구는 연방, 주 또는 시 법규가 요구하는 경우, 정부 직원 또는 법 집행 기관에게 PHI를 사용 및 공개할 수 있습니다. 법정 또는 기타 법 절차상 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PHI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이 아동 학대가 발생한 경우 학생에 대한 사적 정보를 신고해야만 한다고 하는 경우, 교육구는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 공공 보건 활동 보고를 위해:** 특정 공공 건강 정보를 수집하는 책임이 있는 정부 공무원에게 PHI를 사용 및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생, 사망 및 SARS와 수두와 같은 질병에 대한 일부 통계 정보에 대한 일반 정보를 공유합니다.
- 리서치 목적을 위해:** 의료 리서치 목적을 위해 PHI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교육구는 하지만, 자녀의 신원을 식별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PHI를 사용할 것입니다.
-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개인 또는 대중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교육구는 법 집행 기관, 응급요원이나 이런 위험을 중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 PHI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기금 모금:** 교육구의 서비스를 강화 및 확대하기 위한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그랜트를 신청하거나 그리고/또는 기금 모금 기관에게 PHI를 사용 및 공개할 수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지는 않지만, 자녀의 신원이 식별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귀하의 PHI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LAUSD의 관행입니다.

귀하의 권리

- 교육구가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보거나 사본을 취득할 권리 또는 분실되었거나 틀렸다고 생각하는 자녀의 개별 정보를 정정할 권리. 다른 사람(귀하의 의사)이 이런 정보를 교육구에 제공하는 경우, 교육구는 그사람이 누구인지 귀하에게 알려서 이런 정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 비용 지불 또는 건강 케어 운영 활동을 위해 귀하의 건강 정보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청할 권리. (교육구는 이런 요청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합당한 대안책 또는 다른 장소에서 건강 문제에 대해 귀하와 의사소통해줄 것을 교육구에 요청할 권리.
- 귀하의 승인을 서면으로 언제든지 기각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리. 하지만, 부모가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교육구는 자녀의 계속적인 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구가 2003년 4월 14일 이후 작성한 귀하의 건강 정보 공개 목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귀하는 공개를 허락했다.
 - 이런 공개는 치료, 비용 지불 또는 건강 케어 운영을 위한 것이다; 또는
 - 달리 법규에 의해 제한되어 있다
- 질문이 있다면 (213) 241-3851로 전화하십시오

고소 절차

귀하의 사생활 보호권이 위반되었다고 생각되면, 서면 고소장을 다음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Student Health and Human Services
333 South Beaudry Avenue, 29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Attn: Rene Gonzalez, Asst. Superintendent

고소 절차 대안책:

Privacy Complaints
P.O. Box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7500 Security Blvd.
Baltimore, Maryland
1-800-633-4227





A

종교적 사유로 결석	13
학생 기록 접할 기회	13
처방약 복용	23
알콜, 담배, 약물 및 폭력 방지 및 예방	21
대안 학교	7
방부 처리한 유기체 및 생체 사용하는 과학 실험의 대안	28
연례 살충제 사용 통지서	47
왕따 금지 방침	15
징계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21
공인 살충제 목록	43
석면 관리 플랜	32
출결석	11

B

수업 시작 전 및 방과후 프로그램	27
아침 및 점심 급식 프로그램	27

C

캘리포니아 영어 언어 개발 프로그램 테스트	26
캘리포니아 고교 졸업시험	26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조기 평가 프로그램	26
휴대폰	18
학생 기록 정보에 대한 이의제기	14
거주지 변경 /이머전시 정보	6
아동 학대	16
아동 건강 액세스 및 메디칼 프로그램 (CHAMP)	49
전염병 예방	24
의무 교육	6
학생 품행 규정	15
학교 통학버스 품행 규정	17
조정된 안전 및 건전한 학교 플랜	22

D

해당 부서	3
-------	---

E

교육적 권리 및 책임	5
교육적 옵션 학교	8

교육의 형평성	9
정당한 결석	12

F

연방 및 주법의 영향을 받는 가족의 교육적 권리 및 사생활 보호	13
여러 서식	35
포스터 청소년	7
정치적 행동, 집회, 군중, 데모 및 워크아웃 포함한 표현의 자유정	17

G

총기 없는 안전한 학교	22
--------------	----

H

무숙자 학교	7
--------	---

I

예방 접종	23
색인	51
정보 공개 허락서	39
종합 해충 관리 프로그램	32

타교육구 등록 허가증 및 전학	8
인터넷 사용	18
학교 대항 운동경기	14
교육구 내의 등록 허가 및 전학	8

L

LAUSD 졸업 및 필수조건	5
LAUSD 연락 정보 통지 시스템	
“CONNECT-ED” 서식서	41
LAUSD 통지 시스템: “CONNECT-ED”	33
LAUSD 학생/학교 품행 규정	16
총 교육감이 드리는 메시지	*
학생 기록 보관 장소	14

M

의료 및 건강 정보	23
기타 건강 정보	25

N

언론 공개	11
차별 금지 성명서	9
사생활 보호 통지	50



O			
기회 전학	21	성 희롱 관련 방침	15
기타 중요 정보	27	표준 학력고사 및 결과 발표	25
P		학생 사고 보험	28
학부모 참여	10	학생 훈육: 정학, 퇴학 및 기회 전학	18
학부모 참여 방침	11	학생 복장 규정/교복	17
콘돔 제공 프로그램 관련		학생 건강 보험	24
학부모/보호자 연례 통지서	31	학생 권리 및 의무	14
학부모/학생 인정서	37	학생 수색	17
학부모의 권리	10	학생 개인 소지품	18
학부모의 알 권리	11	장애 학생 및 특수 교육	10
학생 성적 변경에 대한 부모의 권리	11	제 504조에 의거한 장애 학생/의료 상태	10
등록 허가증 및 학생 전학	8	보충 교육 서비스	7
신체 검진	24	정학 및 퇴학	19
체력 검사	26	T	
비상시 대책	22	학력고사 및 평가	25
공립학교 선택	7	타이틀 IX 및 학생	9
학생 출석 옵션	8	전학 관련 권리	8
학생 훈육: 징계 규칙	18	교통편	28
임시 장애 학생	24	무단 결석	12
R		결핵 일소	23
퇴학으로부터의 재활 및 복원	21	U	
학생과의 관계	15	근거 없는 결석	13
종교적 사유로 인한 결석	13	균일 고소 절차	31
비상시 대처	23	V	
금전적 배상/부모 책무	13	학교 캠퍼스 방문인	22
S		W	
안전한 학교 환경	21	부모는 비상사태 발생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23
학교 책무 보고서	8	부모는 비상사태를 더 잘 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22
거주지 학교	6	윌리엄스/벨렌주엘라 균일 고소 절차	32
학교 스케줄	11		
학교 중심 메디칼 서비스	25		
캘리포니아 종합 성 건강 및 HIV/에이즈			
예방 교육법에 준한 성교육 과목	28		

